

제320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2월9일(월)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학도서관진흥법안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5.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134.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136.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
13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138.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13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한국수어법안
143.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144.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1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0. 여행업법안
151.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
15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0. 바둑 진흥법안
16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2.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3. 체육기본법안
164. 체육인 복지법안
16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
17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3. 포틀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
 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유기준·심재철·서상기·길정우·홍일표·이장우·이현재·이철우·김기현·김근태·이학재·이완영·송광호·이주영·이만우·이한성 의원 발의) 15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김한표·김태원·함진규·문정림·한선교·김상민·권은희·이완영·김현숙 의원 발의) 15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김세연·김용태·김태원·김태흠·민병주·박성호·박민식·박인숙·신성범·여상규·유일호·유재중·한선교 의원 발의) 15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유은혜·김동철·유기홍·김승남·김태년·유성엽·박인숙·이석현·박홍근·정성호·박주선·강기정·우원식 의원 발의) 16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유은혜·김동철·유기홍·김승남·김태년·유성엽·박인숙·이석현·박홍근·정성호·박주선·강기정·우원식 의원 발의) 16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정희수·박인숙·박성호·강은희·김동완·이에리사·김기선·길정우·김세연·강기윤·김을동·윤후덕·김명연·함진규 의원 발의) 16
 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김세연·이찬열·김태년·윤관석·민홍철·김재윤·박홍근·설훈·임수경·이해찬·유은혜 의원 발의) 16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김세연 · 이찬열 · 김태년 · 윤관석 · 민홍철 · 김재윤 · 박홍근 · 설훈 · 임수경 · 이해찬 · 유은혜 의원 발의) 16
9. 대학도서관진흥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윤관석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호 · 이낙연 · 김우남 · 민병주 · 문대성 · 강은희 · 최봉홍 · 하태경 · 이철우 · 정진후 · 서상기 의원 발의) 16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이강후 · 최봉홍 · 문대성 · 이노근 · 홍지만 · 박성호 · 이한성 · 김한표 · 김태원 의원 발의) 16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 경대수 · 문대성 · 김태흠 · 조명철 · 윤명희 · 민홍철 · 이상일 · 김상민 · 박인숙 · 배기운 · 박성호 · 이한성 · 유승우 · 정문헌 · 이채익 · 고희선 · 김재원 · 이우현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6
1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정갑윤 · 이만우 · 강석훈 · 이현재 · 홍지만 · 김정록 · 김태환 · 유재중 · 이완영 의원 발의) 16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 · 서영교 · 배기운 · 강기정 · 전순옥 · 최재성 · 김동철 · 최원식 · 이춘석 · 추미애 · 노웅래 · 주승용 의원 발의) 16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이명수 · 윤관석 · 홍종학 · 전순옥 · 유성엽 · 이인영 · 조정식 · 유은혜 · 민홍철 · 전정희 · 유승희 · 박인숙 의원 발의) 16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 · 배기운 · 신경민 · 정호준 · 윤후덕 · 이해찬 · 우윤근 · 조정태 · 박홍근 · 설훈 · 강기정 · 유기홍 · 박주선 · 김영록 · 이윤석 · 배재정 · 김동철 · 박성호 · 박완주 · 우원식 · 김세연 · 최동익 · 임내현 · 김성주 · 윤관석 · 박혜자 · 추미애 · 김상희 의원 발의) 16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이용섭 · 배기운 · 배재정 · 추미애 · 박남춘 · 신경민 · 설훈 · 윤관석 · 조명철 · 김재윤 · 유승희 · 전순옥 의원 발의) 16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김장실 · 백군기 · 정희수 · 김세연 · 나성린 · 주호영 · 홍지만 · 이현재 · 김한표 · 서상기 · 이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63) 16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인재근 · 박수현 · 배기운 · 김우남 · 김관영 · 이용섭 · 윤후덕 · 신경민 · 김성곤 · 원혜영 의원 발의) 16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남춘 · 배재정 · 정호준 · 배기운 · 이인영 · 신경민 · 전순옥 · 최민희 · 윤후덕 · 강동원 · 유기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6128) 16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문정림 · 이만우 · 황영철 · 김태원 · 김동완 · 이한성 · 김성찬 · 류지영 · 박인숙 · 김종태 · 김경협 · 조원진 · 김현숙 · 권은희 · 유기준 의원 발의) 16
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김재연 · 한정애 · 李宰榮 · 도종환 · 최민희 · 김미희 · 오병윤 · 이석기 · 이상규 · 김선동 의원 발의) 16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심상정 · 김제남 · 박원석 · 박홍근 · 유기홍 · 배재정 · 최재성 · 김태년 · 서기호 · 김상희 · 김성주 의원 발의) 17
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이상민 · 문병호 · 전순옥 · 윤관석 · 배재정 · 추미애 · 배기운 · 최민희 · 정청래 의원 발의) 17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김윤덕 · 김장실 · 장하나 · 도종환 · 박수현 · 이인영 · 이미경 · 유기홍 · 유은혜 · 이상직 · 김태년 · 박홍근 · 정진후 의원 발의) 17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민기 · 박남춘 · 배기운 · 유승우 · 노웅래 · 오제세 · 김승남 · 이찬열 · 김현미 의원 발의) 17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이목희 · 인재근 · 유승희 · 노웅래 · 유은혜 · 서기호 · 민홍철 · 윤관석 · 박완주 · 부좌현 · 김재윤 · 배기운 · 추미애 · 전순옥 · 김광진 · 이인영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5514) 17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김우남 · 박지원 · 신경민 · 노영민 ·

- 유기홍·윤호중·부좌현·박완주·정진후·이상직·배기운·추미애·인재근·김진표·김재윤·안규백·이인영·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23) 17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김재연·오병윤·유성엽·이만우·윤관석·정성호·김미희·이상규·이석기·김선동 의원 발의) 17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장하나·박수현·변재일·윤관석·한명숙·민홍철·유승희·홍영표·임내현·김용익·신장용·도종환·이학영·윤호중·노웅래·박홍근·김광진·김상희 의원 발의) 17
30.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유성엽·이학재·송영근·최원식·김세연·이한성·김광진·이만우·정우택·강동원·박인숙·황주홍 의원 발의) 17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한성·이만우·조명철·이에리사·염동열·이군현·김세연·이학재·윤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3) 17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유은혜 의원 발의) 17
3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이한성·김을동·전하진·정병국·윤명희·한기호·유기준·박창식·김장실·박성호·주호영·류지영 의원 발의) 17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백성호·주호영·최봉홍·서상기·김세연·강석훈·손인춘·이우현·李宰榮 의원 발의) 17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윤후덕·김광진·문병호·김재윤·유승희·전순옥·박민수·최민희·유성엽·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0) 17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윤후덕·김광진·문병호·김재윤·유승희·전순옥·박민수·최민희·유성엽·정호준 의원 발의) 17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박민수·나성린·김성태·이재오·홍지만·김한표·이현재·서상기·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6007) 17
3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이한성·윤관석·이재영·조명철·김형태·주호영·이학재·박인숙·이만우 의원 발의) 17
4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이만우·조명철·김세연·유재중·박인숙·김태원·이한성·서용교·문정림·김상민 의원 발의) 17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이만우·조명철·김세연·유재중·박인숙·김태원·이한성·서용교·문정림·김상민 의원 발의) 17
4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만우·박인숙·이한성·이노근·이완영·문대성·이강후·김경협·손인춘·박성호 의원 발의) 17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전병헌·유기홍·도종환·김윤덕·이원욱·윤관석·박홍근·강기정·김진표·박기춘·노웅래·배재정 의원 발의) 18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홍근·정세균·배재정·김상희·정진후·배기운·우원식·김태년·유기홍·안민석·박혜자·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4) 18
4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김한표·김태원·함진규·김영우·문정림·한선교·김상민·이완영·권은희·김현숙 의원 발의) 18
4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김한표·김태원·함진규·김영우·문정림·한선교·김상민·권은희·이완영·김현숙 의원 발의) 18
4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김태원·김광림·김기선·김기현·윤명희·이한성·주호영·정병국·조원진 의원 발의) 18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배기운·전순옥·강기정·김광진·정성호·이용섭·장병완·최재성·신학용·이낙연·전정희·강창일 의원 발의) 18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문병호·이찬열·배기운·전순옥·강기정·김광진·정성호·이용섭·장병완·최재성·신학용·전해철·한정애·전정희·박혜자·강창일 의원 발의) 18
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염동열·정문헌·정희수·안홍준·이만우·강석훈·이한성·김광진·강기윤·이군현·서상기 의원 발의) 18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황영철·유승우·김재원·염동열·정진후·정문헌·김기선·한선교·이만우·이미경·안홍준·유성엽·김태원·조원진·이한성·이자스민·문정립·박인숙·민현주·강은희·장윤석·전정희·김영우·정우택·남인순·김정록·박민수 의원 발의) 18
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최원식·배기운·이춘석·진선미·서기호·최민희·박영선·김재윤·민홍철·남인순 의원 발의) 18
5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립 의원 발의) 18
5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김세연·이찬열·김태년·윤관석·민홍철·박홍근·설훈·유성엽·임수경·정진후·유은혜·이상규 의원 발의) 18
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낙연·조정식·박완주·박남춘·윤관석·장병완·김태년·노웅래·최재성 의원 발의) 18
5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강길부·신학용·이강후·김태원·이만우·서상기·류지영·박창식·김현숙·전하진·홍지만·김성찬·민병주 의원 발의) 18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우·이만우·이주영·이학재·송영근·이한성·조명철·강은희·박인숙·김태원·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4814) 18
5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우·이낙연·이주영·권은희·이학재·송영근·조명철·이만우·강은희·윤관석·박인숙·김태원·이에리사 의원 발의) 18
5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이우현·이만우·강은희·김동완·이명수·김한표·민홍철·손인춘·주영순·한기호·김상훈·이이재 의원 발의) 18
6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원유철·김종태·손인춘·이만우·이강후·김한표·권은희·박인숙·서상기 의원 발의) 18
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강기정·우원식·정진후·이낙연·유은혜·김태년·김상희·이석현·김민기·이상직·유기홍 의원 발의) 18
6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배기운·강동원·최원식·김태년·전순옥·박혜자·최민희·박범계·안민석·김관영·김영록 의원 발의) 19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주영·이낙연·황영철·박성호·하태경·김한표·이운룡·서영교·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0) 19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정갑윤·이만우·강석훈·이현재·홍지만·김정록·김태환·유재중·이완영 의원 발의) 19
65.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을동·이우현·홍지만·정갑윤·박대출·남경필·서상기·고희선·김태환 의원 발의) 19
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서영교·배기운·강기정·전순옥·최재성·김동철·최원식·이춘석·추미애·노웅래·주승용 의원 발의) 19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우윤근·추미애·홍종학·김재운·안규백·이춘석·한정애·김기준·윤관석·박지원·황주홍·민홍철·백근기 의원 발의) 19

6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이만우 · 이한성 · 김성찬 · 김태원 · 민홍철 · 고희선 · 이우현 · 박인숙 · 김영우 · 심재권 의원 발의) 19
7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윤명희 · 김동완 · 이현재 · 황영철 · 이만우 · 이노근 · 정문헌 · 조원진 · 김태원 · 권은희 · 이채익 · 민홍철 · 김종태 의원 발의) 19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김재원 · 김세연 · 강기윤 · 이만우 · 김태원 · 이명수 · 이학재 · 이한성 · 나성린 · 최봉홍 의원 발의) 19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정문헌 · 김성곤 · 이낙연 · 이만우 · 이한성 · 서영교 · 김승남 · 이노근 · 민홍철 · 박인숙 · 김종태 · 김현숙 · 권은희 · 조명철 의원 발의) 19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박원석 · 배재정 · 심상정 · 김태년 · 박홍근 · 김상희 · 안민석 · 최재성 · 서기호 · 강동원 · 김제남 · 장하나 · 유성엽 · 유기홍 · 유은혜 · 한명숙 · 이용섭 · 도종환 · 우원식 · 은수미 · 김용익 의원 발의) 19
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유은혜 · 도종환 · 김승남 · 임수경 · 진성준 · 전순옥 · 김태년 · 윤관석 · 최민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17) 19
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용섭 · 남인순 · 배재정 · 배기운 · 이미경 · 전순옥 · 박민수 · 도종환 · 김태년 · 윤후덕 · 정호준 · 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6368) 19
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 · 손인춘 · 김희국 · 홍지만 · 조원진 · 심학봉 · 주호영 · 이철우 · 윤재옥 · 서상기 의원 발의) 19
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윤관석 · 김광진 · 박주선 · 정진후 · 정호준 · 강기정 · 김성주 · 이상규 · 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029) 19
78.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유승우 · 유승민 · 김태원 · 문정림 · 이노근 · 권은희 · 정갑윤 · 남경필 · 문대성 의원 발의) 19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김윤덕 · 장하나 · 도종환 · 박수현 · 이인영 · 이미경 · 유기홍 · 유은혜 · 이상직 · 정진후 · 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475) 19
8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김종태 · 홍지만 · 서용교 · 박창식 · 김장실 · 문정림 · 김무성 · 최봉홍 · 김영우 · 정문헌 · 유승희 · 이노근 · 권은희 · 함진규 · 이상일 · 민병주 의원 발의) 19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강동원 · 문희상 · 민병두 · 박수현 · 배기운 · 변재일 · 이미경 · 이상직 · 이종걸 · 이해찬 · 임내현 · 전정희 · 최민희 · 추미애 의원 발의) 19
8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박원석 · 서기호 · 박홍근 · 배재정 · 심상정 · 김제남 · 강동원 · 김상희 · 김태년 · 유은혜 의원 발의) 20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박원석 · 서기호 · 박홍근 · 배재정 · 심상정 · 김제남 · 강동원 · 김상희 · 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1) 20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함진규 · 김태원 · 이명수 · 문정림 · 이현승 · 전순옥 · 박상은 · 이현재 · 이장우 · 정희수 · 정문헌 · 김을동 의원 발의) 20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민기 · 박홍근 · 김영록 · 유은혜 · 유기홍 · 김승남 · 박지원 · 우원식 · 이상직 · 박주선 · 이용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6) 20
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안규백 · 이미경 · 이윤석 · 이목희 · 최민희 · 윤후덕 · 부좌현 · 박주선 · 박수현 의원 발의) 20
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김제남 · 심상정 · 강동원 · 박원석 · 서기호 · 배재정 · 박홍근 · 김상희 · 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4) 20
8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이만우 · 이한성 · 박인숙 · 김성찬 · 김태원 · 최봉홍 · 심학봉 · 강기윤 · 민병주 · 유승우 · 김상훈 의원 발의) 20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강창일 · 조정식 · 이종걸 · 양승조

	· 김현미 · 신경민 · 김재윤 · 이상민 · 박홍근 의원 발의)	20
9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 · 유성엽 · 우윤근 · 정진후 · 백근기 · 신경민 · 유은혜 · 최민희 · 윤후덕 · 배재정 · 추미애 · 김동철 · 윤관석 · 유기홍 · 배기운 · 최재성 · 전순옥 · 김성곤 · 정호준 의원 발의)	20
91.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윤덕 · 김동철 · 박홍근 · 정성호 · 박주선 · 정진후 · 유기홍 · 진성준 · 이상직 · 이석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6096)	20
92.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남춘 · 배재정 · 정호준 · 배기운 · 이인영 · 신경민 · 전순옥 · 최민희 · 윤후덕 · 강동원 · 유기홍 의원 발의)	20
9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손인춘 · 김장실 · 박인숙 · 주호영 · 이만우 · 강은희 · 김세연 · 유승우 · 이에리사 의원 발의)	20
9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김제남 · 심상정 · 김용익 · 배재정 · 은수미 · 장하나 · 박홍근 의원 발의)	20
9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김춘진 · 배재정 · 박홍근 · 배기운 · 장병완 · 최민희 · 노응래 · 전병헌 · 유성엽 · 윤관석 · 최동익 · 이목희 · 홍영표 · 조경태 · 박완주 · 윤호중 · 우윤근 · 이종걸 · 김용익 · 한명숙 · 유기홍 · 진성준 · 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7)	20
9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 · 배기운 · 서용교 · 최원식 · 배재정 · 김제남 · 심상정 · 정진후 · 이춘석 · 박원석 · 유성엽 의원 발의)	20
9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윤관석 · 박지원 · 우상호 · 박혜자 · 임수경 · 홍의락 · 윤후덕 · 은수미 · 진선미 · 김현미 · 김기식 · 한명숙 · 전해철 · 이목희 · 김현 · 도종환 · 배재정 · 유승희 · 노영민 · 윤호중 · 최원식 · 진성준 · 유기홍 · 추미애 · 이용섭 · 김윤덕 · 이상직 · 배기운 · 백재현 · 김상희 · 이인영 · 최민희 · 정세균 · 김용익 · 오영식 · 박수현 · 김성주 · 홍종학 · 최재성 · 박홍근 · 정진후 · 박영선 · 박완주 · 인재근 · 유성엽 · 이석현 · 남인순 · 설훈 · 김재윤 · 전병헌 · 이춘석 · 강창일 의원 발의)	20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조정식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0
9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조정식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0
10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조정식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1
10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조정식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1
102.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조정식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1
1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조정식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1
1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강은희 · 이에리사 · 주호영 · 김장실 · 박창식 · 박인숙 · 염동열 · 이학재 · 김세연 · 박성호 의원 발의)	21
10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강은희 · 주호영 · 김장실 · 김세연 · 박인숙 · 이학재 · 김희정 · 염동열 · 박창식 · 이에리사 의원 발의)	21
106.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주호영 · 김장실 · 이학재 · 이에리사 · 박인숙 · 염동열 · 박창식 · 김희정 · 김세연 · 박성호 의원 발의)	21
1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대표발의)(강창희 · 김세연 · 김정훈 · 민병주 · 조원진 · 배기운 · 윤진식 · 김춘진 · 김경협 · 정희수 · 이강후 · 신경림 · 김동완 · 유승우 · 심윤조 · 정몽준 · 장하나 · 문대성 · 길정우 · 김을동 · 박수현 · 김중훈 · 정문헌 · 李宰榮 · 김	

- 광진·권은희·현영희·이만우·한선교·최규성·이주영·유재중·조명철·김성찬·안효대·조정식·서영교·주영순·박창식·염동열·김상희·남인순·심학봉·심재철·홍영표·김태원·이한성·도중환·함진규·박성호·윤관석·유승민·이중훈·김무성·김정록·이완영·이우현·강동원·이자스민·변재일·황주홍·강창일 의원 발의) 21
10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윤 의원 발의) 21
10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용익·이재영·임내현·양승조·배기운·박남춘·이주영·김우남·최동익 의원 발의) 21
1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金永柱·노웅래·홍종학·안민석·강동원·배기운·김성곤·정청래·김우남·최민희·김진표·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1) 21
1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만우·정호준·신장용·이학영·유성엽·박주선·이종걸·김우남·진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3) 21
1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유성엽·이상직·김우남·문병호·신기남·박남춘·전정희·홍종학·남인순·박인숙·전해철·정성호·金永柱 의원 발의) 21
1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박홍근·조정식·전병헌·도중환·박남춘·박완주·김용익·김재운 의원 발의) 21
1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박홍근·조정식·전병헌·도중환·박남춘·박완주·김용익·김재운 의원 발의) 21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태원·임수경·배기운·유성엽·최민희·홍종학·김광진·박남춘·김미희 의원 발의) 21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세연·강기정·안민석·김영록·최봉홍·은수미·유승우·전하진·신장용·이만우·김재원·유성엽 의원 발의) 21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배기운·박수현·문병호·김광진·윤관석·심재권·이상민·김민기·안규백·전해철·이인영·홍종학·전정희·전순옥·남인순 의원 발의) 22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도중환·배재정·박홍근·진성준·김광진·김용익·배기운·김재운·전순옥·김상희·정진후·정세균 의원 발의) 22
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우남·강기정·배기운·정청래·안민석·박남춘·이찬열·김진표·최재성 의원 발의) 22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우남·강기정·배기운·정청래·안민석·박남춘·이찬열·김진표·최재성 의원 발의) 22
1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우남·강기정·배기운·정청래·안민석·박남춘·이찬열·김진표·최재성 의원 발의) 22
1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우남·강기정·배기운·정청래·안민석·박남춘·이찬열·김진표·최재성 의원 발의) 22
1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정성호·유대운·김윤덕·배기운·남경필·홍지만·민병두·김을동·전순옥·신장용·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2) 22
1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원·박인숙·박성호·홍지만·김을동·윤명희·민병주·박창식·이에리사 의원 발의) 22
1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윤명희·김희선·이명수·윤상현·이재영·李宰榮·김재원·서용교·송영근·박인숙·이채익 의원 발의) 22

- 1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배기운·강동원·신경민·박주선·정성호·유성엽·이석기·남인순·심상정·홍종학·이종걸·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349) 22
- 1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배기운·우윤근·윤관석·김우남·심재권·남인순·전정희·김성곤·정성호·김춘진·박인숙 의원 발의) 22
- 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정문헌·정희수·김태원·한선교·박인숙·이에리사·이이재·이장우·함진규·이현승·김태흠·이재균·김관영·정몽준·강은희·정수성·김한표 의원 발의) 22
- 1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서상기·김세연·박민식·권성동·신의진·주영순·김용태·정수성·이자스민·여상규·신성범·이이재·유재중 의원 발의) 22
- 1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이만우·김성찬·강석호·박성호·나성린·양승조·김기선·박상은·정수성 의원 발의) 22
- 1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정성호·신경민·김윤덕·최민희·도종환·김관영·유승희·강동원·박남춘 의원 발의) 22
- 1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박수현·이춘석·홍종학·배기운·강동원·김성곤·윤관석·전정희·김민기·정성호·김윤덕·전해철·김재운 의원 발의) 22
- 13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김춘진·유기홍·홍종학·인재근·홍지만·김태년·배재정·이상직·추미애·박남춘·오영식·김관영·박완주·배기운·신장용·우원식·김영록·이원욱·강동원·신기남·유승희 의원 발의) 22
- 134.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2
- 1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정두언·김세연·민현주·이자스민·서상기·전하진·문대성·신의진·박민식·이만우·이종훈 의원 발의) 22
- 136.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신의진·이완영·유승우·정문헌·김장실·이만우·김을동·이노근·홍지만·이재영·김성곤·권성동·염동열·이우현 의원 발의) 22
- 13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신장용·김춘진·정병국·백군기·신기남·윤호중·한정애·최민희·이상직·김승남·김광진·진성준·윤관석·박수현·전순옥·김영환·배기운·박남춘·김재운·부좌현·이운룡 의원 발의) 23
- 138.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최규성·임수경·이목희·배기운·신장용·홍종학·주승용·김성곤·이미경 의원 발의) 23
- 13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성곤·김승남·정희수·김우남·이용섭·강창일·김상희·김재운·박남춘 의원 발의) 23
- 1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오영식·배기운·김세연·인재근·도종환·이상직·김성곤·박완주·추미애·박주선·변재일·김윤덕·노웅래·유승희·안규백·윤호중·이한성·윤후덕·홍종학·문병호·최민희 의원 발의) 23
- 14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강은희·남경필·배재정·이만우·김성곤·김종태·김춘진·신의진·이한성·이재영 의원 발의) 23
- 142. 한국수어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안규백·김정록·박성효·이한성·이만우·서상기·조명철·문정림·김무성·김장실·주호영·강은희·박인숙·박성호·염동열·민병주·이군현·김희정·김세연 의원 발의) 23
- 143.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희수·김태흠·이현승·박수현·이이재·이노근·안효대·이윤석·조현룡·李宰榮·박인숙·김을동 의원 발의) 23
- 144.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배기운·박주선·김영주·박남춘·조경태·문병호·정병국·도종환·안민석·김현·이석기·신경민·김윤덕 의원 발의) 23
- 1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남경필·윤명희·조해진·문대성·

- 신의진 · 이재영 · 이완영 · 김현숙 · 金永柱 · 정문헌 · 이한성 · 이우현 · 이노근 · 박인숙 · 최경환 · 이종훈 · 서병수 · 류지영 · 김희국 · 정수성 · 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889) 23
1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 · 남경필 · 윤명희 · 문대성 · 신의진 · 이재영 · 이완영 · 김현숙 · 金永柱 · 문정립 · 정문헌 · 이한성 · 이우현 · 이종훈 · 류지영 · 김희국 · 정수성 · 이노근 · 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7) 23
1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이만우 · 정문헌 · 강기윤 · 김성찬 · 김세연 · 김희정 · 서상기 · 김장실 · 강은희 의원 발의) 23
1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14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서병수 · 주호영 · 김태원 · 김무성 · 이학재 · 권은희 · 김장실 · 이군현 · 서용교 · 문정립 · 강은희 · 서상기 의원 발의) 23
150. 여행업법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정희수 · 정갑윤 · 김세연 · 강기윤 · 이낙연 · 박성호 · 서상기 · 강은희 · 이자스민 · 이한성 의원 발의) 23
151.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 · 정문헌 · 신경민 · 김태원 · 문대성 · 박창식 · 염동열 · 김세연 · 이학재 · 김윤덕 · 주호영 · 이군현 · 김을동 · 이이재 · 유기준 · 이만우 · 유승우 · 이노근 · 이자스민 의원 발의) 23
15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백재현 · 배기운 · 전순옥 · 우윤근 · 강기정 · 김동철 · 유성엽 · 안민석 · 최민희 의원 발의) 23
15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 · 윤관석 · 이상직 · 도종환 · 홍종학 · 배기운 · 김재윤 · 전병헌 · 강동원 · 이석기 · 신경민 · 이학영 · 최민희 · 박주선 · 남경필 · 정성호 의원 발의) 23
15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 · 배기운 · 이종걸 · 김성곤 · 김우남 · 홍영표 · 이학영 · 신장용 · 최동익 · 안민석 · 박남춘 · 최민희 · 김춘진 · 박주선 의원 발의) 23
1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김을동 · 김진태 · 김재원 · 김태환 · 신의진 · 권은희 · 박덕흠 · 유승우 · 주호영 · 이자스민 · 홍지만 · 조원진 의원 발의) 24
1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 · 손인춘 · 송광호 · 이채익 · 유승우 · 박대동 · 김태원 · 장윤석 · 이노근 · 李宰榮 · 이만우 · 문대성 · 이현재 · 유성엽 · 이종훈 · 김영우 · 김세연 · 이한성 · 류지영 · 이우현 · 함진규 · 이재영 · 이명수 · 김정록 · 최봉홍 · 강은희 · 윤명희 · 박성호 의원 발의) 24
1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이종걸 · 양승조 · 백재현 · 김영록 · 이낙연 · 김성곤 · 강창일 · 김우남 · 전병헌 의원 발의) 24
1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유성엽 · 안규백 · 이낙연 · 이상직 · 김우남 · 전병헌 · 문병호 · 신기남 · 박남춘 · 전정희 · 홍종학 · 이인영 · 전해철 · 정성호 의원 발의) 24
15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서영교 · 백재현 · 김동철 · 이낙연 · 배기운 · 추미애 · 이석현 · 이종걸 · 김세연 · 도종환 · 이인제 · 윤관석 · 박지원 · 정갑윤 · 한명숙 · 김우남 · 이춘석 · 최원식 · 김영환 · 안홍준 · 정문헌 · 황진하 · 우상호 · 주영순 · 박성호 · 이상일 · 박인숙 · 박창식 · 김을동 · 유은혜 · 박홍근 · 노웅래 · 이학영 · 황주홍 · 우윤근 · 장병완 · 홍종학 · 이용섭 · 배재정 · 김승남 · 김관영 · 이상직 · 임내현 · 오영식 · 김윤덕 · 신학용 · 신기남 · 우원식 · 정성호 · 유승희 · 최동익 · 안규백 · 오병윤 · 강기정 · 양승조 · 노영민 · 유인태 · 진선미 · 전정희 · 심재권 · 정의화 · 문대성 · 홍익표 · 인재근 · 원유철 · 심윤조 · 김영우 · 원혜영 · 부좌현 · 박혜자 · 이윤석 · 김춘진 · 김경협 · 이찬열 · 박주선 · 김영록 · 김태년 · 설훈 · 전순옥 · 김기준 · 민병두 · 정호준 · 홍의락 · 이원욱 · 신장용 · 민홍철 · 박수현 · 김기식 · 이해찬 · 문희상 · 이미경 · 최민희 · 신계륜 · 전병헌 · 김용익 · 유기홍 · 김상희 · 백군기 · 김진표 · 이상민 · 김광진 · 전해철 · 김영주 · 조정식 · 정세균 · 주승용 · 강창일 · 최규성 · 유승우 · 김성주 · 이언주 · 문병호 · 김선동 · 이주영 · 박민수 · 안효대 · 한정애 · 김민기 · 박기춘 · 박범계 · 문재인 · 송광호 · 윤후덕 · 김제남 · 유

	대운 · 김현미 · 김현 · 박영선 · 심상정 · 남인순 · 박남춘 · 이강후 · 이이재 · 김무성 · 오제세 · 유성엽 · 이인영 · 홍영표 · 안민석 · 강길부 · 성완중 · 진성준 · 임수경 · 김성곤 · 이목희 · 조경태 · 신경민 · 윤호중 · 최재천 · 이명수 · 이재오 · 최재성 · 이자스민 의원 발의)	24
160.	바둑 진흥법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이인제 · 배기운 · 최규성 · 박상은 · 김성찬 · 원유철 · 노영민 · 정우택 · 김기선 · 김민기 · 유인태 · 오제세 의원 발의)	24
16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 · 김정우 · 김성곤 · 이만우 · 김정록 · 손인춘 · 김종태 · 정성호 · 정문헌 · 민병주 · 金永柱 · 이에리사 의원 발의)	24
162.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한기호 · 이명수 · 이재영 · 이노근 · 박대동 · 李宰榮 · 서용교 · 송영근 · 김재원 · 이채익 의원 발의)	24
163.	체육기본법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 · 민병주 · 김영주 · 함진규 · 문정림 · 정갑윤 · 한선교 · 이만우 · 남경필 · 이완영 · 고희선 · 李宰榮 · 이자스민 · 김재원 · 권은희 · 김세연 · 김상민 · 김현숙 의원 발의)	24
164.	체육인 복지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 · 유성엽 · 유기홍 · 이자스민 · 박대동 · 정우택 · 윤명희 · 정희수 · 민병주 · 이우현 · 김재경 · 최봉홍 · 김을동 · 김영우 · 원유철 · 이한성 · 여상규 · 황영철 · 김한표 · 강은희 · 김명연 · 정두언 · 김태흠 · 김세연 · 서상기 · 신학용 · 신의진 · 이종훈 · 이주영 · 염동열 · 유재중 · 김장실 · 이철우 · 정몽준 · 이만우 · 민현주 · 김정훈 · 손인춘 · 송광호 · 유승우 · 김태원 · 장윤석 · 이노근 · 이재영 · 이명수 · 李宰榮 · 김정록 · 이한구 · 류지영 · 서용교 · 길정우 · 박성호 · 이병석 · 함진규 의원 발의)	24
16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박창식 · 이우현 · 남경필 · 홍지만 · 이재영 · 박대출 · 문대성 · 김희정 · 서용교 의원 발의)	24
16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 · 강기윤 · 안홍준 · 김성태 · 이재영 · 김재경 · 김희국 · 김영우 · 윤진식 · 김태흠 의원 발의)	25
1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조현룡 · 문대성 · 홍지만 · 김희정 · 남경필 · 이재영 · 金永柱 · 이우현 · 박상은 · 김한표 의원 발의)	25
16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장하나 · 배기운 · 김재윤 · 윤관석 · 김춘진 · 문병호 · 배재정 · 박남춘 · 전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842)	25
16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배재정 · 최민희 · 윤관석 · 백재현 · 전병현 · 유승희 · 장하나 · 이석기 · 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4873)	25
17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17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17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최원식 · 배기운 · 한명숙 · 백재현 · 최재성 · 박남춘 · 김태년 · 이춘석 · 박영선 의원 발의)	25
1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174.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 · 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안민석 · 정희수 · 배재정 · 배기운 · 이만우 · 김제남 · 한정애 · 오영식 · 전정희 · 박수현 · 윤관석 · 진성준 · 박홍근 의원 발의)	25
175.	경륜 ·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조정식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5
17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5
17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조정식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5
17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강창일 · 전순옥 · 김민기 · 정세균 · 조정식 · 유기홍 · 배기운 · 김우남 · 김희정 · 이찬열 · 최재성 의원 발의)	25

- 17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25
- 18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25
- 1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장실·주호영·이학재·김희정·이에리사·박인숙·박창식·김세연·강은희·박성호 의원 발의) 25
- 1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강은희·주호영·이학재·김장실·박인숙·염동열·박창식·김희정·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25
- 183.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박창식·강은희·주호영·이학재·김장실·염동열·박성호·김희정·김세연·이에리사 의원 발의) 25
- 18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강은희·주호영·김장실·이학재·김희정·박인숙·염동열·김세연·박성호·이에리사 의원 발의) 25
- 18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용익·최동익·윤관석·임내현·장병완·황주홍·배기운·김우남·박남춘 의원 발의) 25
- 1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용익·최동익·윤관석·임내현·장병완·황주홍·배기운·김우남·박남춘 의원 발의) 25
- 18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김장실·이에리사·주호영·강은희·이학재·김희정·염동열·박인숙·박창식·박성호 의원 발의) 26
- 1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장실·박창식·박인숙·염동열·이에리사·강은희·이학재·김희정·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26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관계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황에 따라서 잠시 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체부장관께서는 현재 법사위에 가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신학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부터 제106항까지, 제109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175항부터 제185항까지와 제187항 및 제188항, 이상 23건은 법정형 정비와 관련된 일부개정법률안들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관계로 오늘 상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 23개 법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을 하고 오늘 회의에 상정·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유기준·심재철·서상기·길정우·홍일표·이장우·이현재·이철우·김기현·김근태·이학재·이완영·송광호·이주영·이만우·이한성 의원 발의)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김한표·김태원·함진규·문정림·한선교·김상민·권은희·이완영·김현숙 의원 발의)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김세연·김용태·김태원·김태흠·민병주·박성호·박민식·박인숙·신성범·여상규·유일호·유재중·한선교 의원 발의)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유은혜·김동철·유기흥·김승남·김태년·유성엽·박인숙·이석현·박홍근·정성호·박주선·강기정·우원식 의원 발의)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유은혜·김동철·유기흥·김승남·김태년·유성엽·박인숙·이석현·박홍근·정성호·박주선·강기정·우원식 의원 발의)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정희수·박인숙·박성호·강은희·김동완·이에리사·김기선·길정우·김세연·강기운·김을동·윤후덕·김명연·함진규 의원 발의)
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흥 의원 대표발의)(유기흥·김세연·이찬열·김태년·윤관석·민홍철·김재윤·박홍근·설훈·임수경·이해찬·유은혜 의원 발의)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흥 의원 대표발의)(유기흥·김세연·이찬열·김태년·윤관석·민홍철·김재윤·박홍근·설훈·임수경·이해찬·유은혜 의원 발의)
9. **대학도서관진흥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윤관석·서용교·유승우·박성호·이낙연·김우남·민병주·문대성·강은희·최봉홍·하태경·이철우·정진후·서상기 의원 발의)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강후·최봉홍·문대성·이노근·홍지만·박성호·이한성·김한표·김태원 의원 발의)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경대수·문대성·김태흠·조명철·윤명희·민홍철·이상일·김상민·박인숙·배기운·박성효·이한성·유승우·정문헌·이채익·고희선·김재원·이우현·이에리사 의원 발의)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정갑윤·이만우·강석훈·이현재·홍지만·김정록·김태환·유재중·이완영 의원 발의)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서영교·배기운·강기정·전순옥·최재성·김동철·최원식·이춘석·추미애·노웅래·주승용 의원 발의)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이명수·윤관석·홍종학·전순옥·유성엽·이인영·조정식·유은혜·민홍철·전정희·유승희·박인숙 의원 발의)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배기운·신경민·정호준·윤후덕·이해찬·우윤근·조경태·박홍근·설훈·강기정·유기흥·박주선·김영록·이윤석·배재정·김동철·박성호·박완주·우원식·김세연·최동익·임내현·김성주·윤관석·박혜자·추미애·김상희 의원 발의)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흥 의원 대표발의)(유기흥·이용섭·배기운·배재정·추미애·박남춘·신경민·설훈·윤관석·조명철·김재윤·유승희·전순옥 의원 발의)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장실·백군기·정희수·김세연·나성린·주호영·홍지만·이현재·김한표·서상기·이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63)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인재근·박수현·배기운·김우남·김관영·이용섭·윤후덕·신경민·김성곤·원혜영 의원 발의)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남춘·배재정·정호준·배기운·이인영·신경민·전순옥·최민희·윤후덕·강동원·유기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6128)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문정림·이만우·황영철·김태원·김동완·이한성·김성찬·류지영·박인숙·김종태·김경협·조원진·김현숙·권은희·유기준 의원 발의)
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김재연·한정애·李宰榮·도종환·최민희·김미희·오병윤·이석기·이상규·김선동 의원 발의)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심상정·김제남·박원석·박홍근·유기홍·배재정·최재성·김태년·서기호·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상민·문병호·전순옥·윤관석·배재정·추미애·배기운·최민희·정청래 의원 발의)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윤덕·김장실·장하나·도종환·박수현·이인영·이미경·유기홍·유은혜·이상직·김태년·박홍근·정진후 의원 발의)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민기·박남춘·배기운·유승우·노웅래·오제세·김승남·이찬열·김현미 의원 발의)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목희·인재근·유승희·노웅래·유은혜·서기호·민홍철·윤관석·박완주·부좌현·김재윤·배기운·추미애·전순옥·김광진·이인영·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5514)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우남·박지원·신경민·노영민·유기홍·윤호중·부좌현·박완주·정진후·이상직·배기운·추미애·인재근·김진표·김재윤·안규백·이인영·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23)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김재연·오병윤·유성엽·이만우·윤관석·정성호·김미희·이상규·이석기·김선동 의원 발의)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장하나·박수현·변재일·윤관석·한명숙·민홍철·유승희·홍영표·임내현·김용익·신장용·도종환·이학영·윤호중·노웅래·박홍근·김광진·김상희 의원 발의)
30.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유성엽·이학재·송영근·최원식·김세연·이한성·김광진·이만우·정우택·강동원·박인숙·황주홍 의원 발의)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한성·이만우·조명철·이에리사·염동열·이군현·김세연·이학재·윤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3)
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유은혜 의원 발의)
3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이한성·김을동·전하진·정병국·윤명희·한기호·유기준·박창식·김장실·박성호·주호영·류지영 의원 발의)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백성호·주호영·최봉홍·서상기·김세연·강석훈·손인춘·이우현·李宰榮 의원 발의)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윤후덕·김광진·문병호·김재윤·유승희·전순옥·박민수·최민희·유성엽·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0)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윤후덕·김광진·문병호·김재윤·유승희·전순옥·박민수·최민희·유성엽·정호준 의원 발의)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박민수·나성린·김성태·이재오·홍지만·김한표·이현재·서상기·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6007)
3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이한성·윤관석·이재영·조명철·김형태·주호영·이학재·박인숙·이만우 의원 발의)
4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이만우·조명철·김세연·유재중·박인숙·김태원·이한성·서용교·문정림·김상민 의원 발의)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이만우·조명철·김세연·유재중·박인숙·김태원·이한성·서용교·문정림·김상민 의원 발의)
4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만우·박인숙·이한성·이노근·이완영·문대성·이강후·김경협·손인춘·박성호 의원 발의)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전병헌·유기홍·도종환·김윤덕·이원욱·윤관석·박홍근·강기정·김진표·박기춘·노웅래·배재정 의원 발의)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홍근·정세균·배재정·김상희·정진후·배기운·우원식·김태년·유기홍·안민석·박혜자·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4)
4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김한표·김태원·함진규·김영우·문정림·한선교·김상민·이완영·권은희·김현숙 의원 발의)
4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김한표·김태원·함진규·김영우·문정림·한선교·김상민·권은희·이완영·김현숙 의원 발의)
4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김태원·김광림·김기선·김기현·윤명희·이한성·주호영·정병국·조원진 의원 발의)
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배기운·전순옥·강기정·김광진·정성호·이용섭·장병완·최재성·신학용·이낙연·전정희·강창일 의원 발의)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문병호·이찬열·배기운·전순옥·강기정·김광진·정성호·이용섭·장병완·최재성·신학용·전해철·한정애·전정희·박혜자·강창일 의원 발의)
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염동열·정문헌·정희수·안홍준·이만우·강석훈·이한성·김광진·강기운·이근현·서상기 의원 발의)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황영철·유승우·김재원·염동열·정진후·정문헌·김기선·한선교·이만우·이미경·안홍준·유성엽·김태원·조원진·이한성·이자스민·문정림·박인숙·민현주·강은희·장윤석·전정희·김영우·정우택·남인순·김정록·박민수 의원 발의)
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최원식·배기운·이춘석·진선미·서기호·최민희·박영선·김재윤·민홍철·남인순 의원 발의)
5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운·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5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김세연·이찬열·김태년·윤관석·민홍철·박홍근·설훈·유성엽·임수경·정진후·유은혜·이상규 의원 발의)
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낙연·조정식·박완주·박남춘·윤관석·장병완·김태년·노웅래·최재성 의원 발의)
56.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강길부·신학용·이강후·김태원·이만우·서상기·류지영·박창식·김현숙·전하진·홍지만·김성찬·민병주 의원 발의)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우·이만우·이주영·이학재·송영근·이한성·조명철·강은희·박인숙·김태원·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4814)
5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우·이낙연·이주영·권은희·이학재·송영근·조명철·이만우·강은희·윤관석·박인숙·김태원·이에리사 의원 발의)
5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이우현·이만우·강은희·김동완·이명수·김한표·민홍철·손인춘·주영순·한기호·김상훈·이이재 의원 발의)
6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원유철·김종태·손인춘·이만우·이강후·김한표·권은희·박인숙·서상기 의원 발의)
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강기정·우원식·정진후·이낙연·유은혜·김태년·김상희·이석현·김민기·이상직·유기홍 의원 발의)

6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배기운 · 강동원 · 최원식 · 김태년 · 전순옥 · 박혜자 · 최민희 · 박범계 · 안민석 · 김관영 · 김영록 의원 발의)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이주영 · 이낙연 · 황영철 · 박성호 · 하태경 · 김한표 · 이운룡 · 서영교 · 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0)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정갑윤 · 이만우 · 강석훈 · 이현재 · 홍지만 · 김정록 · 김태환 · 유재중 · 이완영 의원 발의)
65.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김을동 · 이우현 · 홍지만 · 정갑윤 · 박대출 · 남경필 · 서상기 · 고희선 · 김태환 의원 발의)
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 · 서영교 · 배기운 · 강기정 · 전순옥 · 최재성 · 김동철 · 최원식 · 이춘석 · 추미애 · 노웅래 · 주승용 의원 발의)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우윤근 · 추미애 · 홍종학 · 김재윤 · 안규백 · 이춘석 · 한정애 · 김기준 · 윤관석 · 박지원 · 황주홍 · 민홍철 · 백군기 의원 발의)
6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이만우 · 이한성 · 김성찬 · 김태원 · 민홍철 · 고희선 · 이우현 · 박인숙 · 김영우 · 심재권 의원 발의)
7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윤명희 · 김동완 · 이현재 · 황영철 · 이만우 · 이노근 · 정문헌 · 조원진 · 김태원 · 권은희 · 이채익 · 민홍철 · 김종태 의원 발의)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김재원 · 김세연 · 강기윤 · 이만우 · 김태원 · 이명수 · 이학재 · 이한성 · 나성린 · 최봉홍 의원 발의)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 · 정문헌 · 김성곤 · 이낙연 · 이만우 · 이한성 · 서영교 · 김승남 · 이노근 · 민홍철 · 박인숙 · 김종태 · 김현숙 · 권은희 · 조명철 의원 발의)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박원석 · 배재정 · 심상정 · 김태년 · 박홍근 · 김상희 · 안민석 · 최재성 · 서기호 · 강동원 · 김제남 · 장하나 · 유성엽 · 유기홍 · 유은혜 · 한명숙 · 이용섭 · 도종환 · 우원식 · 은수미 · 김용익 의원 발의)
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유은혜 · 도종환 · 김승남 · 임수경 · 진성준 · 전순옥 · 김태년 · 윤관석 · 최민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17)
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용섭 · 남인순 · 배재정 · 배기운 · 이미경 · 전순옥 · 박민수 · 도종환 · 김태년 · 윤후덕 · 정호준 · 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6368)
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 · 손인춘 · 김희국 · 홍지만 · 조원진 · 심학봉 · 주호영 · 이철우 · 윤재옥 · 서상기 의원 발의)
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윤관석 · 김광진 · 박주선 · 정진후 · 정호준 · 강기정 · 김성주 · 이상규 · 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029)
78.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유승우 · 유승민 · 김태원 · 문정림 · 이노근 · 권은희 · 정갑윤 · 남경필 · 문대성 의원 발의)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김윤덕 · 장하나 · 도종환 · 박수현 · 이인영 · 이미경 · 유기홍 · 유은혜 · 이상직 · 정진후 · 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475)
8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김종태 · 홍지만 · 서용교 · 박창식 · 김장실 · 문정림 · 김무성 · 최봉홍 · 김영우 · 정문헌 · 유승희 · 이노근 · 권은희 · 함진규 · 이상일 · 민병주 의원 발의)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강동원 · 문희상 · 민병두 · 박수현 · 배기운 · 변재일 · 이미경 · 이상직 · 이종걸 · 이해찬 · 임내현 · 전정희 · 최민희 · 추미애 의원 발의)

8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김태년·유은혜 의원 발의)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1)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함진규·김태원·이명수·문정립·이현승·전순옥·박상은·이현재·이장우·정희수·정문헌·김을동 의원 발의)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민기·박홍근·김영록·유은혜·유기홍·김승남·박지원·우원식·이상직·박주선·이용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6)
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안규백·이미경·이윤석·이목희·최민희·윤후덕·부좌현·박주선·박수현 의원 발의)
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김제남·심상정·강동원·박원석·서기호·배재정·박홍근·김상희·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4)
8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이만우·이한성·박인숙·김성찬·김태원·최봉홍·심학봉·강기윤·민병주·유승우·김상훈 의원 발의)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강창일·조정식·이종걸·양승조·김현미·신경민·김재윤·이상민·박홍근 의원 발의)
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유성엽·우윤근·정진후·백근기·신경민·유은혜·최민희·윤후덕·배재정·추미애·김동철·윤관석·유기홍·배기운·최재성·전순옥·김성곤·정호준 의원 발의)
9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윤덕·김동철·박홍근·정성호·박주선·정진후·유기홍·진성준·이상직·이석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6096)
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남춘·배재정·정호준·배기운·이인영·신경민·전순옥·최민희·윤후덕·강동원·유기홍 의원 발의)
9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손인춘·김장실·박인숙·주호영·이만우·강은희·김세연·유승우·이에리사 의원 발의)
9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심상정·김용익·배재정·은수미·장하나·박홍근 의원 발의)
9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춘진·배재정·박홍근·배기운·장병완·최민희·노용래·전병현·유성엽·윤관석·최동익·이목희·홍영표·조경태·박완주·윤호중·우윤근·이종걸·김용익·한명숙·유기홍·진성준·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7)
9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서기호·배기운·서용교·최원식·배재정·김제남·심상정·정진후·이춘석·박원석·유성엽 의원 발의)
9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윤관석·박지원·우상호·박혜자·임수경·홍의락·윤후덕·은수미·진선미·김현미·김기식·한명숙·전해철·이목희·김현·도종환·배재정·유승희·노영민·윤호중·최원식·진성준·유기홍·추미애·이용섭·김윤덕·이상직·배기운·백재현·김상희·이인영·최민희·정세균·김용익·오영식·박수현·김성주·홍종학·최재성·박홍근·정진후·박영선·박완주·인재근·유성엽·이석현·남인순·설훈·김재윤·전병현·이춘석·강창일 의원 발의)
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9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0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0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강은희·이에리사·주호영·김장실·박창식·박인숙·염동열·이학재·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10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강은희·주호영·김장실·김세연·박인숙·이학재·김희정·염동열·박창식·이에리사 의원 발의)
1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주호영·김장실·이학재·이에리사·박인숙·염동열·박창식·김희정·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1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대표발의)(강창희·김세연·김정훈·민병주·조원진·배기운·윤진식·김춘진·김경협·정희수·이강후·신경립·김동완·유승우·심윤조·정몽준·장하나·문대성·길정우·김을동·박수현·김종훈·정문헌·李宰榮·김광진·권은희·현영희·이만우·한선교·최규성·이주영·유재중·조명철·김성찬·안효대·조정식·서영교·주영순·박창식·염동열·김상희·남인순·심학봉·심재철·홍영표·김태원·이한성·도종환·함진규·박성호·윤관석·유승민·이종훈·김무성·김정록·이완영·이우현·강동원·이자스민·변재일·황주홍·강창일 의원 발의)
10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한표·김재원·최봉홍·유승우·김성태·박창식·김기선·노철래·강기운 의원 발의)
10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용익·이재영·임내현·양승조·배기운·박남춘·이주영·김우남·최동익 의원 발의)
1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金永柱·노웅래·홍종학·안민석·강동원·배기운·김성곤·정청래·김우남·최민희·김진표·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1)
1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이만우·정호준·신장용·이학영·유성엽·박주선·이종걸·김우남·진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3)
1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유성엽·이상직·김우남·문병호·신기남·박남춘·전정희·홍종학·남인순·박인숙·전해철·정성호·金永柱 의원 발의)
1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박홍근·조정식·전병헌·도종환·박남춘·박완주·김용익·김재윤 의원 발의)
1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재정·박홍근·조정식·전병헌·도종환·박남춘·박완주·김용익·김재윤 의원 발의)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태년·임수경·배기운·유성엽·최민희·홍종학·김광진·박남춘·김미희 의원 발의)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세연·강기정·안민석·김영록·최봉홍·은수미·유승우·전하진·신장용·이만우·김재원·유성엽 의원 발의)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배기운 · 박수현 · 문병호 · 김광진 · 윤관석 · 심재권 · 이상민 · 김민기 · 안규백 · 전해철 · 이인영 · 홍종학 · 전정희 · 전순옥 · 남인순 의원 발의)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배재정 · 박홍근 · 진성준 · 김광진 · 김용익 · 배기운 · 김재윤 · 전순옥 · 김상희 · 정진후 · 정세균 의원 발의)
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강기정 · 배기운 · 정청래 · 안민석 · 박남춘 · 이찬열 · 김진표 · 최재성 의원 발의)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강기정 · 배기운 · 정청래 · 안민석 · 박남춘 · 이찬열 · 김진표 · 최재성 의원 발의)
1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강기정 · 배기운 · 정청래 · 안민석 · 박남춘 · 이찬열 · 김진표 · 최재성 의원 발의)
1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강기정 · 배기운 · 정청래 · 안민석 · 박남춘 · 이찬열 · 김진표 · 최재성 의원 발의)
1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 · 정성호 · 유대운 · 김윤덕 · 배기운 · 남경필 · 홍지만 · 민병두 · 김을동 · 전순옥 · 신장용 · 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2)
1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정두원 · 박인숙 · 박성호 · 홍지만 · 김을동 · 윤명희 · 민병주 · 박창식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윤명희 · 김희선 · 이명수 · 윤상현 · 이재영 · 李宰榮 · 김재원 · 서용교 · 송영근 · 박인숙 · 이채익 의원 발의)
1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 · 배기운 · 강동원 · 신경민 · 박주선 · 정성호 · 유성엽 · 이석기 · 남인순 · 심상정 · 홍종학 · 이종걸 · 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349)
1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 · 배기운 · 우윤근 · 윤관석 · 김우남 · 심재권 · 남인순 · 전정희 · 김성곤 · 정성호 · 김춘진 · 박인숙 의원 발의)
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정문헌 · 정희수 · 김태원 · 한선교 · 박인숙 · 이에리사 · 이이재 · 이장우 · 함진규 · 이현승 · 김태흠 · 이재균 · 김관영 · 정몽준 · 강은희 · 정수성 · 김한표 의원 발의)
1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근현 의원 대표발의)(이근현 · 서상기 · 김세연 · 박민식 · 권성동 · 신의진 · 주영순 · 김용태 · 정수성 · 이자스민 · 여상규 · 신성범 · 이이재 · 유재중 의원 발의)
1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이만우 · 김성찬 · 강석호 · 박성호 · 나성린 · 양승조 · 김기선 · 박상은 · 정수성 의원 발의)
1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 · 정성호 · 신경민 · 김윤덕 · 최민희 · 도종환 · 김관영 · 유승희 · 강동원 · 박남춘 의원 발의)
1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박수현 · 이춘석 · 홍종학 · 배기운 · 강동원 · 김성곤 · 윤관석 · 전정희 · 김민기 · 정성호 · 김윤덕 · 전해철 · 김재윤 의원 발의)
13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김춘진 · 유기홍 · 홍종학 · 인재근 · 홍지만 · 김태년 · 배재정 · 이상직 · 추미애 · 박남춘 · 오영식 · 김관영 · 박완주 · 배기운 · 신장용 · 우원식 · 김영록 · 이원욱 · 강동원 · 신기남 · 유승희 의원 발의)
134.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 · 정두언 · 김세연 · 민현주 · 이자스민 · 서상기 · 전하진 · 문대성 · 신의진 · 박민식 · 이만우 · 이종훈 의원 발의)
136.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 · 신의진 · 이완영 · 유승우 · 정문헌 · 김장실 · 이만우 · 김을동 · 이노근 · 홍지만 · 이재영 · 김성곤 · 권성동 · 염동열 · 이우현 의원 발의)

13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박병석·신장용·김춘진·정병국·백균기·신기남·윤호중·한정애·최민희·이상직·김승남·김광진·진성준·윤관석·박수현·전순옥·김영환·배기운·박남춘·김재운·부좌현·이운룡 의원 발의)
138.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강창일·최규성·임수경·이목희·배기운·신장용·홍종학·주승용·김성곤·이미경 의원 발의)
13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성곤·김승남·정희수·김우남·이용섭·강창일·김상희·김재운·박남춘 의원 발의)
1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오영식·배기운·김세연·인재근·도종환·이상직·김성곤·박완주·추미애·박주선·변재일·김윤덕·노웅래·유승희·안규백·윤호중·이한성·윤후덕·홍종학·문병호·최민희 의원 발의)
14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강은희·남경필·배재정·이만우·김성곤·김종태·김춘진·신의진·이한성·이재영 의원 발의)
142. **한국수어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안규백·김정록·박성효·이한성·이만우·서상기·조명철·문정립·김무성·김장실·주호영·강은희·박인숙·박성호·염동열·민병주·이군현·김희정·김세연 의원 발의)
143.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희수·김태흠·이헌승·박수현·이이재·이노근·안효대·이윤석·조현룡·李宰榮·박인숙·김을동 의원 발의)
144.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배기운·박주선·김영주·박남춘·조경태·문병호·정병국·도종환·안민석·김현·이석기·신경민·김윤덕 의원 발의)
1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남경필·윤명희·조해진·문대성·신의진·이재영·이완영·김현숙·金永柱·정문헌·이한성·이우현·이노근·박인숙·최경환·이종훈·서병수·류지영·김희국·정수성·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889)
1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홍지만·남경필·윤명희·문대성·신의진·이재영·이완영·김현숙·金永柱·문정립·정문헌·이한성·이우현·이종훈·류지영·김희국·정수성·이노근·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7)
1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이만우·정문헌·강기운·김성찬·김세연·김희정·서상기·김장실·강은희 의원 발의)
1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서병수·주호영·김태원·김무성·이학재·권은희·김장실·이군현·서용교·문정립·강은희·서상기 의원 발의)
150. **여행업법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정희수·정갑윤·김세연·강기운·이낙연·박성호·서상기·강은희·이자스민·이한성 의원 발의)
151.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정문헌·신경민·김태원·문대성·박창식·염동열·김세연·이학재·김윤덕·주호영·이군현·김을동·이이재·유기준·이만우·유승우·이노근·이자스민 의원 발의)
15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안민석·최민희 의원 발의)
15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윤관석·이상직·도종환·홍종학·배기운·김재운·전병헌·강동원·이석기·신경민·이학영·최민희·박주선·남경필·정성호 의원 발의)
15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배기운·이종걸·김성곤·김우남·홍영표·이학영·신장용·최동익·안민석·박남춘·최민희·김춘진·박주선 의원 발의)

- 1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김을동 · 김진태 · 김재원 · 김태환 · 신의진 · 권은희 · 박덕흠 · 유승우 · 주호영 · 이자스민 · 홍지만 · 조원진 의원 발의)
- 1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 · 손인춘 · 송광호 · 이채익 · 유승우 · 박대동 · 김태원 · 장윤석 · 이노근 · 李宰榮 · 이만우 · 문대성 · 이현재 · 유성엽 · 이종훈 · 김영우 · 김세연 · 이한성 · 류지영 · 이우현 · 함진규 · 이재영 · 이명수 · 김정록 · 최봉홍 · 강은희 · 윤명희 · 박성호 의원 발의)
- 1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이종걸 · 양승조 · 백재현 · 김영록 · 이낙연 · 김성곤 · 강창일 · 김우남 · 전병헌 의원 발의)
- 1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유성엽 · 안규백 · 이낙연 · 이상직 · 김우남 · 전병헌 · 문병호 · 신기남 · 박남춘 · 전정희 · 홍종학 · 이인영 · 전해철 · 정성호 의원 발의)
- 15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서영교 · 백재현 · 김동철 · 이낙연 · 배기운 · 추미애 · 이석현 · 이종걸 · 김세연 · 도종환 · 이인제 · 윤관석 · 박지원 · 정갑윤 · 한명숙 · 김우남 · 이춘석 · 최원식 · 김영환 · 안홍준 · 정문헌 · 황진하 · 우상호 · 주영순 · 박성호 · 이상일 · 박인숙 · 박창식 · 김을동 · 유은혜 · 박홍근 · 노웅래 · 이학영 · 황주홍 · 우윤근 · 장병완 · 홍종학 · 이용섭 · 배재정 · 김승남 · 김관영 · 이상직 · 임내현 · 오영식 · 김윤덕 · 신학용 · 신기남 · 우원식 · 정성호 · 유승희 · 최동익 · 안규백 · 오병윤 · 강기정 · 양승조 · 노영민 · 유인태 · 진선미 · 전정희 · 심재권 · 정의화 · 문대성 · 홍익표 · 인재근 · 원유철 · 심윤조 · 김영우 · 원혜영 · 부좌현 · 박혜자 · 이윤석 · 김춘진 · 김경협 · 이찬열 · 박주선 · 김영록 · 김태년 · 설훈 · 전순옥 · 김기준 · 민병두 · 정호준 · 홍의락 · 이원욱 · 신장용 · 민홍철 · 박수현 · 김기식 · 이해찬 · 문희상 · 이미경 · 최민희 · 신계륜 · 전병헌 · 김용익 · 유기홍 · 김상희 · 백군기 · 김진표 · 이상민 · 김광진 · 전해철 · 김영주 · 조정식 · 정세균 · 주승용 · 강창

일 · 최규성 · 유승우 · 김성주 · 이언주 · 문병호 · 김선동 · 이주영 · 박민수 · 안효대 · 한정애 · 김민기 · 박기춘 · 박범계 · 문재인 · 송광호 · 윤후덕 · 김제남 · 유대운 · 김현미 · 김현 · 박영선 · 심상정 · 남인순 · 박남춘 · 이강후 · 이이재 · 김무성 · 오제세 · 유성엽 · 이인영 · 홍영표 · 안민석 · 강길부 · 성완중 · 진성준 · 임수경 · 김성곤 · 이목희 · 조경태 · 신경민 · 윤호중 · 최재천 · 이명수 · 이재오 · 최재성 · 이자스민 의원 발의)

- 160. 바둑 진흥법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이인제 · 배기운 · 최규성 · 박상은 · 김성찬 · 원유철 · 노영민 · 정우택 · 김기선 · 김민기 · 유인태 · 오제세 의원 발의)
- 16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 · 김정우 · 김성곤 · 이만우 · 김정록 · 손인춘 · 김종태 · 정성호 · 정문헌 · 민병주 · 金永柱 · 이에리사 의원 발의)
- 162.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한기호 · 이명수 · 이재영 · 이노근 · 박대동 · 李宰榮 · 서용교 · 송영근 · 김재원 · 이채익 의원 발의)
- 163. 체육기본법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 · 민병주 · 김영주 · 함진규 · 문정림 · 정갑윤 · 한선교 · 이만우 · 남경필 · 이완영 · 고희선 · 李宰榮 · 이자스민 · 김재원 · 권은희 · 김세연 · 김상민 · 김현숙 의원 발의)
- 164. 체육인 복지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 · 유성엽 · 유기홍 · 이자스민 · 박대동 · 정우택 · 윤명희 · 정희수 · 민병주 · 이우현 · 김재경 · 최봉홍 · 김을동 · 김영우 · 원유철 · 이한성 · 여상규 · 황영철 · 김한표 · 강은희 · 김명연 · 정두언 · 김태흠 · 김세연 · 서상기 · 신학용 · 신의진 · 이종훈 · 이주영 · 염동열 · 유재중 · 김장실 · 이철우 · 정몽준 · 이만우 · 민현주 · 김정훈 · 손인춘 · 송광호 · 유승우 · 김태원 · 장윤석 · 이노근 · 이재영 · 이명수 · 李宰榮 · 김정록 · 이한구 · 류지영 · 서용교 · 길정우 · 박성호 · 이병석 · 함진규 의원 발의)
- 16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박창식 · 이우현 · 남경필 · 홍지만 · 이재영 · 박대출 · 문대성 · 김희정 · 서용교 의원 발의)

16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강기윤·안홍준·김성태·이재영·김재경·김희국·김영우·윤진식·김태흠 의원 발의)
1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조현룡·문대성·홍지만·김희정·남경필·이재영·金永柱·이우현·박상은·김한표 의원 발의)
16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하나·배기운·김재윤·윤관석·김춘진·문병호·배재정·박남춘·전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842)
16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배재정·최민희·윤관석·백재현·전병헌·유승희·장하나·이석기·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4873)
17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최원식·배기운·한명숙·백재현·최재성·박남춘·김태년·이춘석·박영선 의원 발의)
1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4.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안민석·정희수·배재정·배기운·이만우·김제남·한정애·오영식·전정희·박수현·윤관석·진성준·박홍근 의원 발의)
17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7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7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7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
- 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7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총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8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강창일·전순옥·김민기·정세균·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우남·김희정·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1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장실·주호영·이학재·김희정·이에리사·박인숙·박창식·김세연·강은희·박성호 의원 발의)
1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강은희·주호영·이학재·김장실·박인숙·염동열·박창식·김희정·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183.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박창식·강은희·주호영·이학재·김장실·염동열·박성호·김희정·김세연·이에리사 의원 발의)
18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강은희·주호영·김장실·이학재·김희정·박인숙·염동열·김세연·박성호·이에리사 의원 발의)
18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용익·최동익·윤관석·임내현·장병완·황주홍·배기운·김우남·박남춘 의원 발의)
1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용익·최동익·윤관석·임내현·장병완·황주홍·배기운·김우남·박남춘 의원 발의)

18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김장실·이에리사·주호영·강은희·이학재·김희정·염동열·박인숙·박창식·박성호 의원 발의)

1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장실·박창식·박인숙·염동열·이에리사·강은희·이학재·김희정·김세연·박성호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74항 안민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부터 174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188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88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건의 법률안은 이미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입법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여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정부가 제출한 제안설명 자료는 회의장 노트북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우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길정우 의원 예.

○위원장 신학용 의사일정 제136항 및 제15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우 의원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의 선배 위원님 여러분!

서울 양천갑 출신의 길정우 의원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는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발전 그리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이면서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부처별 그리고 부서별로 분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충분한 성과를 내기에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관련 부처 그리고 기관 간에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총괄 조정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법안의 입법 취지를 심분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 문화에 대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국제문화 미디어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1997년에 국가적으로 국제문화 미디어 교류 진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국제방송교류재단, 일명 아리랑국제방송이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은 민법상의 재단이므로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법상의 근거를 마련하여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해외홍보방송으로서의 그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리랑국제방송원으로 새롭게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법안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길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의원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의사일정 제174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본 촉구 결의안을 가장 먼저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

야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초에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의 3년에 걸친 요구 끝에 지금 현재 동경국립박물관의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이것이 23일까지 공개 열람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칫하면 앞으로 영원히 세상 밖으로 다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제가 호소드린 결과 우리 양당 간사님께서 선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0월 7일 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본 국립도쿄박물관 소장의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은 일제 강점 당시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에 의해서 약탈된 조선 문화재로 추정됩니다. 왕실 물품은 궁내부가 관리하던 것으로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것인데 국립도쿄박물관이 오구라 컬렉션으로부터 기증받았다면 도난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미국도 올해 들어 호조태환권과 문정왕후 어보의 반환을 결정하는 등 소장 유물이 정상 경로로 입수됐다 해도 도난품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반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성실한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따라 불법 취득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대한민국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반환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소중한 우리 문화재인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되고 반환되기 전에 일본의 반입 경위가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의원님 의사일정 제 15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김재운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및 월드컵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주요 대회로 불리는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광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챔피언십과 마스터즈대회가 통합 개최되어 202개국의 2만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광주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관광산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개최가 되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도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국제경기대회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성공리에 개최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지정하여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서남수 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6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된 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4항 및 제148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운영하여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중앙미술관의 임원 및 이사회 등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 기관운영평가와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00만 명 외래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호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호텔업의 등급 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호텔업자의 등급 결정 신청의무를 관광진흥법으로 상향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호텔등급 표지 등의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붙이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홍보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등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안하오니 동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장직무대행인 박영대 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0항, 제171항 및 제17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와 공시 제도를 마련하며 중요무형문화

재 보유자에 대하여 문화재 수리 기능 자격을 부여하여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김장 문화, 아리랑 등과 같이 특성상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행위를 공무원의 행위로 의제하도록 하여 문화재행정이 책임성 있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중요하다고 인정된 곳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장문화재가 효율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안하오니 동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의원의 의사에 따라 문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회의 이래 촉박하여 확정된 관계로 일부 법률안의 제안설명 자료는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7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진대 수석전문위원……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학용** 예.

○**유기홍 위원** 검토보고 앞서서 의사진행말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기도 한데요.

지난 회의에서 사실은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검토 단계에서의 채점표, 완전한 회의록 이제까지 제출 안 하고 있고요. 전문가협의회라는 이름의 협의회가 도대체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회의했는지 자료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최종 수정본 발표 계획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왜 그것이 또 내일로 연기됐는지 하는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발표가 문제가 있을 경우 오늘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인지 정말 그런 문제 좀 지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 수정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400개 단체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400개 단체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400개 단체 명단이 오늘까지도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개 단체에 여러 교육단체 시민단체들 또 역사관련 단체들 한국교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들어 있는데 유독 전교조만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도착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리고 특히 야당 간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부탁한 제출 요구한 자료들입니다. 아무리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교육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사실은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수정심의회 명단이 내일 기자회견 때 같이 발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는 그분들 모시기가 힘들어서 명단 발표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교육부 사정입니다. 이 수정심의 과정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해야지요. 채택 작업 다 끝난 다음에 명단 공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수정심의회 명단 내일 공개해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400개 단체 어떤 단체들인지 명단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유독 왜 전교조는 빠져 있는지 하는 사유서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장관, 그렇게 하시겠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오늘 발표하려다가 내일로 미룬 것은 실무적으로 발표 준비를 하는

데, 어저께 회의를 한 결과 도저히 오늘까지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고 실무진에서 얘기를 해서 늦춘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400개 단체 그 자료는 회의 종료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기홍 위원** 전교조 왜 거기서 빠졌는지 사유서도 같이 보내 주시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교과서 선정된 이후에 그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수정심의회 명단 내일 발표하세요!

○**위원장 신학용** 수정심의회 명단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표해 달라 했고 그거 같이해야 과연 교육부에서 이번에 올바른 수정 절차를 밟았는지 하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표할 거면 같이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권고를 저도 장관에게 드립니다.

○**유기홍 위원** 이건 노파심 때문에 다시 말씀드 리는데 장관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을 해도 누구인지 모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 채택 작업 다 끝내 놓고 수정심의회 명단 발표했는데 굉장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수정심의회 구성이 됐다면 그때 가서 교과서 채택 작업 다시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수정심의 작업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일 수정심의회 명단 15명 발표하세요!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진대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그리고 제98항부터 10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수석전문위원 임진대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교육부 소관 법률안 109건 중 5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검토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의원님 대표발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회의 회법안은 법률에 근거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회의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타 대학협의회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기본사항의 수립·공표 및 준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기본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입법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대성 의원님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학전형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예전에 시행되던 체력장 제도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여 폐지된 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군현 의원님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계약학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학습비 반환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박혜자 의원님 대표발의 학점인정법 개정안은 학점인정 대상이 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과정의 학습자 보호조치 및 평가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원 의원님 대표발의 학원법 개정안은 심야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학원과 개인과외교습 간의 형평성 및 차별성,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기홍 의원님 대표발의 서울대학교병원법과 국립대병원법 개정안은 대학병원의 성과 및 회계 재산 등을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보조비율을 두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보조를 중단하고 반환을 명하는 내용인데, 대학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예산의 신축적인 운용을 저해할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세연 의원님 대표발의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해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님 대표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학교가 부담한 법인부담금을 사후에라도 학교법인이 재정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다시 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는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전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윤석 의원님 대표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등심위 구성·운영 현황 및 심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대학알리미를 통해 등심위의 구성현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각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대표발의 학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학원을 포함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고,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김영환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이용섭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 민병두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하여 입법취지가 달성되었습니다.

강은희 의원님, 김재연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3건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의 근로보호가 취약한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고시·협의를주체, 근로조건 보장의 정도 및 대상 등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용래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문해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법정화돼 있는데 그 하부의 문해교육센터까지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재현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청학점별 등록금제 도입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충분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원식 의원님과 김재연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학교조직을 신설·통폐합하려는 경우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재도 학교조직을 통폐합하는 경우 학칙의 제·개정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대표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이 학생기숙사비 산정근거 및 기숙사 수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김장실 의원님 대표발의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은 '1910년 이후' 근대 시기의 한문 전적에 대한 번역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전문헌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인데 번역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점·학위 취소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정원감축, 학과 폐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인데 개정안대로 하면 학점·학위 취소명령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진후 의원님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 또는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측면을 상호 비교형량하여 평가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정우택 의원님 대표발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8%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박창식 의원님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전문대학 수업연한을 1년부터 4년까지로 다양화하고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실무 중심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전문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입법으로 보지만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변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원의 임용동의나 임면에 대해 심의할 때 학위취득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학위수여 당시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인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검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님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의사회 중앙회 소속의 평가인증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인데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유기홍 의원님 대표발의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장실 의원님 대표발의 독학법 개정안 중 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응시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학위취득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에 보장된 청문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대표발의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시행 이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에게 저금리의 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용유의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4년 예산안이 현행 ICL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학생만을 전환대출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희 의원님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정세균 의원님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12년 1월 사립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도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하였는데 겸직 내용을 법 시행 전에 소급하여 인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고 소급인정 여부에 대해서 찬반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강사 조항의 시행일

을 2년간 유예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98번 신학용 위원장님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이낙연 의원님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까지는 현행 법률 전반에 걸쳐 행정형별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3월 14일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법정 행정비자문위원회의 성과를 입법으로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법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인이 작년에 교육기본법과 교권 확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이 간사로 있을 때부터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희정 간사로 바뀌고 난 뒤에도 제가 몇 차례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해 주겠다고,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 발의한 내용이 교육감선거제도, 간행물심의위원회에 관한 법률 개정 또 청소년 관련 법안들 지금 이 4건을 발의를 해서 올렸는데도 제 의견은 여기에 하나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학용 현영희 위원님, 교육기본법은 이미 상정되어 있고요 소위에 가서 계류 중이고요……

○현영희 위원 아니, 계속 계류 중이면 됩니까? 작년에 이미,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아니, 이미 상정돼서 소위에 계류중이라니까요.

○**현영희 위원** 아니, 계류 중만 계속하고 있어요, 계류 중만.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 법안은 만날 계류 중에만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현 위원님, 오늘은 상정만 하는 거예요. 대체토론하고 나서 오늘 이것 다시 또 소위로 다 넘길 겁니다. 나머지 법안은 지금 7월 중순까지 발의된 법안은 다 상정되고요 그 이후 것은 아직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45항부터 제97항까지의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의사일정 45번부터 97번까지입니다.

검토보고 요약 2번입니다.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내용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학교체육 진흥법에 두고 학교보건법상 학생에 대한 신체능력 검사는 학생건강체력평가로 같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일 밑 부분입니다.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시설 내부에 CCTV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치원 종사자의 인권보호 측면과 유아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원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 등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비교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험 준비과정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입

니다.

제일 밑 부분입니다.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재단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생이 거주지 이전 등에 따라 영재교육기관 또는 학교로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각 영재교육기관마다 입학 자격 및 절차 등에 차이가 있고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은 비정규학교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률에 따라 학력 인정을 받은 각종 학교의 이름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 임의적으로 재의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동일한 재의·제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정부 제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박성호 의원, 김기현 의원 각각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후조치에 기여가 큰 경우나 직원 및 기간제교원의 성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근절 활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

다.

정진후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 각각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특성화중학교나 고등학교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제중·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 등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학교를 폐지할지의 여부는 그간의 운영 성과, 학교선택권 및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회계 세출 중 학교운영경비에 공공요금 등의 인상 비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인정 평생교육시설 간 전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학교생활기록 관리를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의무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일 밑에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각급 학교 장의 교무통할권과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장·원장의 임기 중 진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교장임기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섭 의원, 박혜자 의원, 윤관석 의원 각각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과정 제·개정의 심의 등을 위해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교과 과정 및 교과용도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입법이지만 세 개정안의 차이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도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학재 의원, 정진후 의원 각각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 부담

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효과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에서 생략한 법률안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제188항까지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7건의 법률안과 문화재청 소관 11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콘텐츠 분야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력 요청이 있으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에 게임물 이용교육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등급분류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까지 일체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인 간 계약내용의 강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안은 예술영화·독립영화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증진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폐업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안은 영화업자 간 영화공급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사인 간의 계약 내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안은 누구든지 영화 상영이나 상영 중인 영화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정의를 현행 18세 미만자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지 않은 대학생이 청소년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9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저작권 사용료·수수료 승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승인제를 폐지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수업목적 보상금 면제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대학교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형태 및 이용되는 저작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안은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수업목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제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미 FTA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재개정하는 내용인데 현행 규정이 한미 FTA 협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복사기기에 스캐너나 사진기 등을 명시하는 내용인데 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안은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저작물에 대해 게시자의 삭제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는 저작물이 아닌 정보도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음반의 범위에 디지털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음악산업이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원시장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안은 법인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저작권 주체를 기준으로 친고죄와 비친고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어야 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이용제한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은 공예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로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에 공예산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조직의 효율화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인화의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길정우 의원, 박병석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은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부의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체계화하는 내용인데 업무의 총괄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법률에서 직접 기념일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2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안은 문화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격요건 및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안은 문화지구 내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어법안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글 세계화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정부의 한글 세계화 정책은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걷는 길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는 길 조성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만 의원 대표발의안은 관광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에 구급약품 등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관광객에게 제공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 홍지만 의원 대표발의안은 유원시설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제출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자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광호텔 등급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제회의 관련 시설 집적효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부담금 및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행업법안은 여행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업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행업무 관리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은 현행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특수법인인 아리랑국제방송원으로 변경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시민단체의 중재위원 참여는 법적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대상 간행물을 대폭 축소하려는 내용이나 출판사 및 서점업계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후생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게임제 공업의 영업장 수 등에 관하여 총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안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상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단체에 신고상담기관을 임의적·개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안은 체육지도자 중 스포츠지도사를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제대회에 입상하지 못한 국가대표선수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인들의 은퇴 후 생활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대상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는 것인데 타 대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은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기보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저작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우선 이 법에 따른 전통무예의 지정이 이루어진 후 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기본법안은 체육정책의 체계성·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현재 사실상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정비하여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인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안은 무형문화재 정의에 한글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한글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현행법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체계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안은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 법률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부분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인데, 무형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사항은 문화재에 대한 일반법인 현행법에 존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문화재의 가치평가 및 감정가액 추산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사의 기피현상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은 근대 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만 국가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우

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부안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내용인데 공법적 성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관리행위의 포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굴조사 전문인력의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문화재청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인데,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을 근거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법정법인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건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안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및 그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문화재수리업 사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업회생의 도모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만 시행일 이후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하고 문화재수리의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의무신고 기간을 두어 경력관리제도가 제대로 이행·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은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조사를 촉구하고,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따라 불법 취득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대한민국으로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은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라 행정형벌의 편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정족수로 관계로 의사일정 제174항 안민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려는 것이지요.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새누리당 김희정입니다.

먼저 평소에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활동하고 계신 안민석 위원님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아주 찬성하고 국회에서 이런 것을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문화재청에서 취득경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엄밀하게 하셔서, 저희가 국회에서 이렇게 촉구 결의안까지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조사가 미비해 가지고 우리 것인지를 밝힐 길이 없다라든지 해서 앞으로 다른 문화재 반환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사 과정을 철저하게 선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화재청 차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문화재청 차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청장 직무대행 박영대** 문화재청 차장입니다.

지금 일본 도쿄 박물관 측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 2월 전에 저희 문화재청에서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협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 과정에 어려움은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대신 철저히 조사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 국회가 결의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조사결과 미비로 인해서 안됐을 경우에 정말 국회까지 나선 일도 이렇게 안되면 나서지 않은 문화재 반환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의안의 취지를 잘 살려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문화재청 박영대 차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신학용 정진후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

○정진후 위원 정진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돼서 상정된 법안의 심사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된 이후에 자동상정기간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돼서 오늘 지금 상정된 법률안만 하더라도 교육 부문이 거의 200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부문도 80개가 넘고요.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까지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본래 역할을 감안한다면 이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개폐를 통해서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고 목적인데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우리 상임위의 법안심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수백 개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만 되어서 사실상 본격적인 심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줄속적인 심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 법안심사에 대한 우리 상임위 차원의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의

하면 이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법률안이 수백 건 쌓여 있고 늘상 기다리는 형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법률심사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여야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법안소위 심의하는 날짜가 너무 적어서 우선 가능한 대로 추가로 며칠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법안심사 기일?

○강은희 위원 예.

○위원장 신학용 그것은 어차피 심사소위원장이 김희정 간사님이고 또 유기홍 간사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시 한 번 두 분께서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의견 모아 주신 투구 반환 문제와 관련된 결의안은, 도쿄 국립박물관 전시일자가 23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국회 결의에 입각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직접 도쿄 국립박물관을 방문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일정을 잘 감안하셔서, 혹시 내일도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긴급하게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것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세연 위원님.

○金世淵 委員 문화재 반환 노력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결의안 채택 시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일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동시에 업

혀 있어서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관계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 또 독도 문제,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과 함께 대마도 불상과 관련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쟁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갑옷과 투구 반환 문제가 이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데, 한 가지 한일관계에서 우리 입장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지만 지금 얽혀 있는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쟁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면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이 한 건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틀 안에서 보려면 아무래도 외통위에서 이 문제들이 전체 종합적인 어떤 대책의 하나로써 거론되도록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 건을 가지고 본회의로 바로 가는 것보다 외통위와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일단 의결이 된 상황에서 유기홍 위원께서는 이것을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를 요청하셨고 김세연 위원님께서 국제정세, 한일관계 경색 문제 여러 가지를 봐서 좀 더 신중한 시기 선택을 요청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어떤 쪽을 따라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두 분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여야 간사님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제가 지금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위원장 신학용** 예,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金世淵 委員** 외통위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외통위와 협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왜냐하면 이 의견은 23일…… 23일이 열람 마지막 날입니까?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직무대행 박영대** 예, 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 전까지 한번 해 보자는 뜻이고, 기타 문제는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고 국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래서 국

회 의견에 따라서 행정부가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외교부와 문화재청이랑 긴밀한 협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국회의 의견은 그렇게……

그래도 행정부가 나서는 게 일본정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우리 결의안이 대외관계에 하는……

○**유기홍 위원** 결의안은 선언적 의미니까……

○**위원장 신학용** 선언적 의미니까 그것을 따라서 행정부가 할 것은, 시기조절은 외교부나 같이 논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해외 문화재 반환은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문제예요. 사실 일본에 헤아릴 수 없는 우리 문화재가 있고요.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한 6만 점 정도의 우리 문화재가 있고 이 문화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즉 말하자면 우리와 일본의 합의에 의해서 일본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결의안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은 필요하고요. 단지 이게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1차적으로는 환수 그런 문제 이전에 어떻게 해서 조선의 궁에 있던 게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것은 한일 양국의 우호와 신뢰의 차원에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본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단지 국회 촉구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차원이지만 않겠습니까, 이게 법률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측에 요청을 하되 이 요청은 우리가 한일관계를 신중히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 정확한 반입경위를 밝히는 것은 한일 양국의 신뢰와 우애를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요청을 하면 일본 측의 비위를 거스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 이 촉구 결의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세연 위원님, 여기 보니까 1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성실한 조사를 요청할 것을 그냥 촉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 직접 일본 정부에 이래라 저래라는 간섭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기를 잘 선택하겠다 그런 말도 하셨고 하나니까.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문체부장관님, 제가 장관님 청문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통합해 놓은 것을 분리하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부가 지금 공청회를 거치고 이것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많은 체육인들은 그 결정에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일반 전문 지도자와 생활체육 지도자가 통합됐을 때 오는 혼란 이런 문제. 그런데 다행히도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전문으로 하고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생활체육지도사로 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이에리사 위원 법안 개정안을 내고 보니까 지금 체육 관련 유사 지도자 자격증이 너무 많아서 저도 통계를 보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체육 관련 민간자격 1619건 중의 40%가 가짜, 영터리 자격증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도자 자격 분리하는 과정을 하면서 이런 것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추가한다는 것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이에리사 위원 그러니까 자격 명칭이라든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체육 지도자가 아닌 자는 자격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포츠’ ‘체육’ 해서 갖은 종류의 지도자 자격증을 남발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자격증을 줍니다. 이게 사실 국가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래서 지도자 분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 조항까지 포함시키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민간 자격증이 이미 워낙 많이 남발이 돼 있어 갖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의논해 주시면……

○이에리사 위원 문체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번 법안 심의를 할 때 이것도 추가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것도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리고 제가 체육인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존경하는 김재운 특위 위원장께서 지원법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발의를 하셨지요.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스포츠계의 그랜드슬램이라 하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또 하나가 월드컵 축구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했으니까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공감하고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지난 4월 달에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께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 지원을 추가로 넣자는 법안을 발의하셨고 이런 것들에 비춰 볼 때 이번에 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법에다 추가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는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지금 56개가 있습니다. 수영이 이렇게 지원법에 포함이 됐을 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내년 4월에 세계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가 유치돼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그 종목을 국내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렇게 종목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가했을 때, 국가가 국제대회 지원에 대한 자격이나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부에서는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는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국제대회 유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수영대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밝힌 것처럼 원칙적으로 저희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은 하지만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수영선수권대회도 중요하고 사격선수권대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법안 수용이 검토되어야 된다면, 사실 사격대회도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201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격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세계대회고 수영은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세계수영대회인데 만약에 이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같이 병합심사를 해서 모든 조건을 동일한 선상에 놓아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김희정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의당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위원** 교육부장관님, “1946년 해방 직후에 북한은 무상몰수 토지정책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서술이 잘못됐나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과서의 전체 맥락상 남한하고 북한을 비교 서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게 남북한의 비교 서술의 문제가 아니라 1946년 해방 이후의 토지정책에 대한 문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일제하 지주 아래에서 많은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그다음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정책에서 사실상 모든 부분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관통된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 토지를 소유케 하는 것, 이게 지주제의 폐해를 철폐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322쪽의 ‘더 알아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 이런 제목에 나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는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가져왔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폭력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오로지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었다.” 장관께서는 북한에서 언제 소유권이 주어졌거나 혹은 소유권이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수정명령이 안 들어가 있지요, 교학사 본교과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금방 답변하신 것은 1946년 토지개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관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이나 이것은 어떻게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되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이 마치 북한에서는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가지고 균분하여 나눠 주는 것이라고……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장관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친 바로는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고 1950년에 농업협동화가 이루어지고 1958년에 집단농장화가 이루어져서 개인의 소유를 제한했거든요. 1946년 해방 이후의 토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후 나타난 역사적 결과론에 근거한 비학술적 주장으로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학사 교과서도 틀린 기술인데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수정명령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동일한 내용이 2008년 금성교과서 수정명령 내렸던 부분에 똑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에 교과서포럼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요 교육부에서 수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2008년 교과서포럼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명령을 내렸던 내용과 2013년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객관적인 기술을 하라고 하고 어느 한쪽은 결과론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게 단순히 결과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소유권의……

○정진후 위원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기술한다면 타당한 내용인데 당시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내용으로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공개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인데 전연 내놓지 않고 계시니까 내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훈중학교로 대변되는 국제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운영 초기부터 국제중학교는 검찰 수사결과만 보더라도 조직적인 입학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사배자전형 지원자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 성적 조작했고요 입학 대가로 뒤통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받은 거예요. 기부금 입학도 드러났지요.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기부금 낸 것, 이것은 제가 표까지 만들어서 보여 드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적조작 비리에 휘말려 있는 영훈국제중에서 원서도 내지 않은 학생이 합격했던 사실까지도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 취소를 해라, 일반중학교로 전환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은 규칙 하나를 만드는 것도 하지 않고 있고요, 교육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법률 유권해석까지 받아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복지부동이고 뭔가 같이 합작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어요. 특성화중학교의 교육과정상 특성이 사실상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교육부가 적극적인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지요. 개방형이사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지난 시간에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위헌 여부다 해서 위헌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아직까지도 개방이사 하지 않고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관할 청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징계를 지지해도 징계를 완전히 외면하거나 숨방망이로 그쳐 버리는 현상이 비일배재하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승인이 취소된 이사들이 다시 학교 운영에 관여하거나 회의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까?

그런 점을 개정 사립학교법에 담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빨리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오후 일정 때문에 질의를 못 하게 돼서 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예.

○정진후 위원 4월과 8월에 특성화학교 현장실습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장관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현장실습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불분명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야지만 그에 따르는 내용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의도하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장실습의 목적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특성화고 평가를 하는데 여전히 취업률을 반영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정진후 위원 이것 재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산업체로의 현장실습이 특성화고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단순 업무밖에 할 수 없는 편의점이나 마트 취업 이런 아르바이트 역시 포함되고 있어요. 이런 취업률을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사실상 특성화학교의 교육과정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고 특성화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 취업률, 평가지표에 넣는 것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정진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님이 다른 공식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강은희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안 관련한 내용인데요. 대구대학교 포항공과대학 영광학원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강은희 위원** 지금 영광학원의 학교 운영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장이 없는 대학과 교장이 없는 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구성원 측 이사와 종전 재단 측에 조속히 개방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정상화를 여러 번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법적인 한계가 있는 줄은 알고 있고 또 여러 개 법원의 판단을 구 재단에서 받은 바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학교의 분규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것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장기화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도 지금 대구대학교와 관련해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접촉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욱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은희 위원** 교육부에서의 행정지도하고 명령

이 지금 실효가 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올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장학사 시험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시·도 교육청 내부 인사 중심의 시험 문제 출제는 언제든지 또 다른 종류의 비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이렇게 외부 위탁을 하려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럴 경우에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거나 이런 후속 작업도 상당히 심도 있게 되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완전히 의무화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생각에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하는 방향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임의규정 하면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는 되는데 또 준비상황이 상당히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약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으니까 또 문제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게 내부 시험으로 하는 한 그러한 여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에 관해서 법안을 떠나서라도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교육부에서도 세심하게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학습등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주민들 곳곳에 스며들어서 전체 국민들의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평생학습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이나 이런 여타 국민들의 전 주기적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이것을 법으로 강제했을 경우 또 교육부에서도 부담은 예측이 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고교 졸업 후에 선취업 후 진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전 국민의 평생학습체제를 국가가 마련해 주는 기반이 있어야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은희 위원** 다음은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술과 기능 분야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실제 운영이 비정상적인 형태가 많습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정부 법안을 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재청 차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문화재청 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수리기술자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실은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하면서 설계도 할 수 있는 고급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술자이고요. 기능자는 그 밑에서 시공을 하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기능자가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간혹 문화재청 출신 공무원들 중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의 취득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직 문화재청 공무원 중에 일부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강은희 위원** 실제로 문화재수리기술자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대여해서, 본인이 직접 문화재 수리에 가담하는 게 아니고 대여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고 실제로 제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문화재 수리에 참여를 해서 우리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지금 그러한 여론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4개 조로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의심이 가는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은희 위원** 자격증 제도 자체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사실 해병대캠프 사고로 학생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고 기억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장관님께서 직접 깊은 애도의 심정을 표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것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고, 저도 찡했었는데요. 가슴이 아프고 그랬었어요. 국민들 다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교장은 파면, 부장교사는 정직 1개월, 나머지 6명 견책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교원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난 달 중순에 제기를 했네요. 장관님 보시기에 소청심사청구를 해야 할 정도로 억울한 징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뭐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교원들에게 보장된 법적인 권리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도 좀……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모든 교원들이 이렇게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

늘 아침 SBS '모닝와이드'에 보니까 이 소식을 접한 유족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교원들이 갖고 있는 억울한 심정도 있겠지만 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사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아마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법률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원 신규 임용을 위한 임용후보자 전형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임용고시 전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임용고시 출제·채점 업무 이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평가원이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서면 질의를 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교육부는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평가원이 업무 과다로 인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청 주도하에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장관님도 여기에 동의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부분적으로도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또 공정하게 임용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할 마땅한 기관이 없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청에서는 평가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전무하고 또 출제 및 채점 경험이 시·도 교육청에서 부족해서 대책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공정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평가원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교육청의 답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출제위원 확보도 어렵고 또 시도별로 시험 출제를 따로 할 경우에 난이도가 서로 상이하고 이런 것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제 업무를 누가 맡는 게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시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점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중재를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어떤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규 채용 수요가 있는데도 수가 적다고 해서 임용시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본어 같은 경우. 2013학년도·14학년도에 제외되었는데 실제로는 교육청을 통해 확인해 보면 수요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신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임용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장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심의 결과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전국에 있는 172개 4년제 일반대학 학칙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학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된 조항이 없거나 따로 둔다고 언급한 뒤에 관련 규정이 없는 학교가 27개 학교가 있고요.

또 25개 대학에서는 학교 측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이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거나 아예 학생을 학교 측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26개 대학에서는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뒤 가지고서 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내실 있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과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등록금과 같이 서로 입장이 상반되는 내용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제가 항상 질의 하는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너무나 화급해서 제가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제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개를 냈거든요. 하나는 소위 별명이 서남의대법이고 하나는 의평원법인데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합니다.

관동의대 학부모들이 5일째 추운데 밖에서 텐트 치고 농성하는 것 아시지요, 교육부로 안 가고 의협 앞에서 하더라고요. 일주일은 농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의평원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의평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육부에서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요. 그것을 여태까지 다 방치하다가 일이 꾀다꾀다 십몇 년 동안 꾀는 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정말 빨리 잘 통과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해 주시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학이나 이런 쪽에 규제를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해 가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것은 쓸데없는 규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표준지침을 만드는 거지요. 규제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 표준지침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급한 게 세 가지 이유를 들면,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관광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가 간에 국경이 없이.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가지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맞는 의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에서 밀고 오지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대한민국 의사 못 믿겠다’ 다 못 믿겠다는 아니고 특정 대학 3개만 지정해서 ‘그 대학 졸업생만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끼어서 안 되는 대학도 있고 또 정말 억울하게 훌륭한 대학인데 여기 못 간 대학도 있거든요.

제가 꼭 싱가포르를 가자라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서로 통용되는 스탠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해도 이게 꼭 필요하고 병원 수출, 의료 수출에도 이게 꼭 필요한 아주 정말 필수적……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도매금으로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동의대, 서남의대같이 부실 의대가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이 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을 동원해서 의대를 신설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라앉지는 않고 오히려 요즘 막 들끓고 있습니다, 두 의대가 이렇게 되니까 호시탐탐 그것을 가져가려는지, 그런데 저는 이것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의사가 더 필요하면 현재 많은 좋은 의대들의 정원을 늘리면 되지 의과대학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의과대

학 만드는 게 커피숍 여는 게 아니거든요.

각 분야를 소아과, 내과 이렇게 나누면 열몇 개지만 요새는 손가락도 따로 무릎도 따로 등뼈도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훌륭한 교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대 신설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고 부실 의사, 부실 의료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의대 신설은 안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못 박고 싶고요. 의평원 설립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그런데 3년은 충분히 시간을 많이 낭비했거든요. 이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립성, 독립성,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 주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안 된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정부가 나서지 말고, 정부가 참여는 하지만 민간 위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의학 교육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로 봐도 이것을 완전히 민간 분야에 두는 것이 과연……

○박인숙 위원 공공기관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이것은 의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 평가시스템 속에서 의학교육 부분을……

○박인숙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온 거거든요. 이것을 공대하고 의대하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되지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공학평가원하고 의학평가원하고 다 같이 하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사람의 보건의료에 관련된 건데 다른 것하고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체자리걸음으로 또 가시면 안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하고 같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전체적인 대학 평가의 틀 속에서……

○박인숙 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대학 평가는 해야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의학 교육 평가의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박인숙 위원 기준은 달라야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위원 그것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 3년 동안 뭐가 문제였는지 사실 교육부에서 미적 미적 오다가 이렇게 대학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온 것 아니에요.

또 같은 맥락으로 제가 다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서남의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꼬여 있잖아요.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입생은 계속 들어오고 두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도 거의 9 대 1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학에 들어오는데 제가 법을 바꾼 게 서남의대에서 이걸 이행을 하라고, 뭘 이행하냐, 학점 취소가 곧 자격증 취소가 되는 직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의사, 의대 졸업했는데 학위 없어졌다 그러면 의사면허도 없어져요. 그게 문제거든요.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도 여기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사도 해당되고,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 중등 교원 자격증도 졸업장이 없으면 자격증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의사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법에 이행명령 중에 학점 취소와 학위 취소의 명령은 좀 빠자, 그래서 그 법을 보니까 학교의 정원 감축, 학과 폐지, 이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집정지 등’이 들어갔더라고요. ‘등’ 때문에 교육부장관님이 학점 취소, 학위 취소의 명령을 했거든요. 이 명령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징계를 하든 벌금도 주고, 입학 정원도 줄고…… 폐지를 하더라도 왜 갑자기 여태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교육부에서 인가한 학교를 다녔는데 갑자기 이 학교가 나쁘니까 학점도 없어진다, 면허증이 다 없어지면 다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평생 쌓아온 직업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학교가 나쁘게 하니까 없앤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학점 취소, 학위 취소는 좀 빠자 아니면 ‘등’을 빼든가, 그런데 ‘등’을 빼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학점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으로 수업다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게 되면……

○박인숙 위원 그렇다면 서남의대에 대한 것은 폐교를 하는 게 맞지요. 거기서 갑자기 학점 취소를 하면 이 많은 졸업생들이 면허증이 없어진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쁜 학교면 학교 폐쇄를 명령하시든가 신입생 모집 정원도 멈추고 이런 페널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꼭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박혜자 위원 저까지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이번에 교과서 파동을 보면 장관님도 참 느끼는 바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교과서의 검정심의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동의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법률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교학사 교과서 같으면 검정기준을 사실은 명백하게 위배했는데도 검정을 통과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보면 아홉 차례나 개정이 됐어요. 특히 2007년, 2009년 연속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정의 개정 자체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를 두어서 교과서 개정 자체도 기간을 좀 정해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정권과 무관하게 정말 필요할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교육과정 개정 그 자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

다 생각을 합니다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과거에 교육과정이 대개 5년~6년 정도 주기를 두고 하다가 최근에는 워낙에 빠르게 사회가 변하니까 수시개정 체제라고 해서 2000년대 이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빈번하게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서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각기 개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어야 되고 또 교육과정의 수립과 개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공청회라든가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정말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지금도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박혜자 위원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교육과정의 내용까지 고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자는 거지요.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입맛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번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이번에는 좀 특별합니까? 이번만 특별하셔요. 그런 특별사항은 없애십시오. 우리가 교육과정 자체도 예견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상정된 것 중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아까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문체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2015년부터는 챔피언십하고 마스터즈대회가 통합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참가국 수나 참가 규모가 사실상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규

모상으로 맞먹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배당금은 어떻습니까? IOC 스포츠연맹에서 하는 배당금 자체도 지금 A급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그래서 제가 IOC 자료를 보면 수영과 육상, 체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보게 되면 국제종합경기대회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혜자 위원 월드컵 축구라든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처럼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대통령령으로 위임……

○박혜자 위원 대통령령이 아니라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월드컵대회라든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로서 법에 지정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혜자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수영선수권대회도 그 규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위상이 그에 맞먹는 것이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의 지원을 받는 국제경기대회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의 취지는 중요한 대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박혜자 위원 아니,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 부분 아무튼 다른 형평성을 생각을 해 갖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님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54명의 의원들이 상당 부분 동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좀 다릅시다마는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으로 내려가라 이것은 적절치 않지

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무튼 의논을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동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교육부장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점인정제도 질적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여러 가지 학점인정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데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지금 법적으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현행법상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는 없어요. 지금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인정이라든가 신고 등 교육기관의 절차, 요건 이런 것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에 대해서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시정명령을 하면, 이 시정명령을 고쳐 버리면 사실 취소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습과정 자체도 사후관리 규정을 좀 두어야 되고 학습과정 전반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가인정에 대한 신청 제한을 둔다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교육부장관 서남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질 높은 학습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학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저까지, 제가 마지막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좀 여쭙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학교’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힐링한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나 왕따나 교권이나 이런 부분들, 드라마 한편이 지대한 어떤…… 학부모, 학생 또 선생님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 ‘학교’를 통해서 드라마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게 검증이 좀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왕따나 성폭력,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드라마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드라마 업계나 이런 쪽에서도 또 학부모계나 학생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힐링하는 부분이 교육당국에서 있기는 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청률이 한 17%, 20% 되면 한 1000만 명이 넘게 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법 제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법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생각하고 같으신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재정적으로 접근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관심을 갖고 계속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계속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진룡 장관님,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일산의 콘텐츠센터 개관식에 가셨는데 20층에서 내려다 봤을 때 케이팝(K-POP) 공연장이 들어설 장소를 보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창식 위원 그런데 장소는 정해졌지만 아직도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진행되는 게, 제가 그 이후에 몇 개 업체 여쭙어 봤지만 사실 진행되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한류도 어찌 보면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이때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이, 땅은 지목이 되어 있는데 진행이 이렇게 안 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한류에…… 그렇지 않아도 케이팝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국내에도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수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옳은 지적입니다. 그것을 빨리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랑은 잘 진행이 되는데 민간 투자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원래 투자를 하기로 한 업체가 조금 사정이 어려워 갖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 고도화·융복합, 기술인력 수요가 높은 전문대 수업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서 4년으로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아주 필요한 직무지식과 기술교육을 위한 실무 중심의 대학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문대학 출신들이 그늘에서 묵묵히 일해 왔고 산업 역군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대 학제를 보면 2년제가 70.6%, 3년제가 27.4%로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4년제 간호학과가 0.8%, 전공심화 과정이 1.2%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학력 위주의 그런 풍토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몇 년을 공부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단순히 교육연한 갖고 학력이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벌써 일찍이 고등직업교육기관 학제를 1년~4년으로 다양화하고 준학사학위에서 학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창식 위원 그런 어떤 세계화의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배려가 굉장히 필요하고 법률을 고쳐서 사기 진작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거기서 고급 숙련된 기술인력들이 명장, 체계화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업기술명장특수대학원도 최초로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는 법이 통과되면 전문대학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 명장대학원 설치를 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설립인가를 할 생각은 없고요.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몇 개의 대학원을 설치해서 전문대학이라는 이름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니까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나 기능장, 마스터고의 졸업자 등 우수 기술인력이 계속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실무 중심의 선순환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520만 명의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그늘에서 일해 왔던 산업 일꾼들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비전, 그다음에 지금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 있게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안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세요.

○유은혜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오늘 정부에서 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법률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칫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활동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 표현이나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과거와 같은 권위적인 학교 문화 조성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학부모들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교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학생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충돌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강제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데 학부모님들 중에는.....

○유은혜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어떤 제재를 하기보다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로 이렇게 학부모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서 오히려 이것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들도 있

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되고……

○**유은혜 위원** 극단적인 사례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런 기준이나 근거가 좀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도 수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거나 학교에 등교해서는 스마트폰을 보관토록 맡겼다가 그다음에 하교할 때 찾아오고 대체로 학교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그런 과도함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와서 그런지 이것을 법률에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무래도 학생들도 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려면, 아직까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법률로 정해서 이것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효과 면에서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소통과 토론 이런 문화가 제도적으로 학교 내에서 개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인데 법률적으로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무리함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학교육 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융합 교육 전문강사를 초·중등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

련해서 지금 계속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스포츠강사나 또 전문상담사나 이런 강사들이 계속 배치되어 왔었는데 이게 전례로 봐서나 재정의 준비 정도로 봐서나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융합과학 전문강사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강사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준비 정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 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어서 학생 체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다 공감할 수 있으나 이것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했을 때 더 우려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학교체육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체육 활성화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결을 했을 때 또 새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유은혜 위원** 대학입시가 안 그래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줘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과도한 입시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또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일률적으로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문대학 대학원 허용 문제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대학을 좀 특성화한다는 그런 정책 방향과 이 법률개정안의 내용과 좀 상충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대학의 대학원 허용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상 지대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 자료 아직 안 주셨고요.

그리고 이명희 교수 불법 홍보와 관련해서 그 조치나 몇 가지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아직 자료 안 왔습니다, 장관님.

아까 유기홍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자료요청 해도 안 오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빨리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또 예결위에 가서야 될 것 아니에요. 질의해 주세요.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구를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강사법 유예법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2년 유예법안을 낸 것은 입법취지가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처우개선 수혜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강사법 시행을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행정 당국도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상의 준비도 미흡한 실정이라 이것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유예기간 동안에 근본적으로 시간강사 처우개선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시간강사들이 목숨을 끊었는데 98년부터 2010년까지 8명이나 알려져 있는데 그때마다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아직까지 처우는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데 현재 그런 입장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 조선태 시간강사 서정민 씨가 숨진 뒤 11년 3월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했는데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이나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빼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로 시행을 미루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윤관석 위원 지금 준비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교육부장관 서남수 각 대학에서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관석 위원 애초에도 이게 대학의 어떤 선의에 기대했기 때문에 대학의 준비가 안 되면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당사자들도 현재의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다시 개정법률안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신분 속에서 과연 시간강사들이 양질의 교육 준비나 제공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교원 지위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남은…… 유예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다음에 유진룡 문광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 제가 냈는데 법안 취지는 잘 아실 테니까, 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입법취지에서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공예문화산업이 갖고 있고 문화산업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이게 전통공예이고 우리나라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한 요소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진흥 정책은 분절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이 전승이나 계승자, 가치 실현이나 또 일반 국민생활과 많이 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법안을 내게 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문화산업진흥법과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입법 실익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생각에는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나 공예문화는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까지 그 법이 잘, 문화산업진흥법이 적용됐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세하거나 정체성을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예산업이 특수성이 좀 있는 것이고 제가 법안 발의에 착안했던 주목할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예산업 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각별히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도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함프로젝트’ 상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입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관람객 권익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있거나 상영이나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서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는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봤듯이 일방적인 중단이 될 경우 제작자와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또 그걸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관람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또 영상물을 통한 정보 제공 기능 측면에서의 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이것의 과정을 만드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제약되기 때문에 동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천안함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도 국정감사라든지 현안질의 때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다시 영화산업에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인 제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표준계약서가 자율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강제 기능도 좀 약하고 을 보호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영화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법의 표현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가다듬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예, 표현 문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관련해서 문화복지사업 연간 1200억에 달하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 사각지대도 발생하는데 해소에 아직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사 관련한 법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수요가 많고 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효익이 있어서 발의하게 됐는데 장관께서 판단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필요한 제도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만들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군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하고 명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 대전 부산 등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문화복지사를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 수요자 만족도라든지 지자체에서 실제 운영해 본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직은 초기라서 평이 나온 게 없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문화복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생활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조정하더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마지막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대한 건데 이것은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건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러 부처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문화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시간이 끝나서—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필요한 법이고요. 각 부처에서 소관 업무에 따라서 좀 의견을 낸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통합되어서 효율적

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윤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서남수 장관님, 지난 상임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 수정명령과 관련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런 자문을 분명히 받아 봤을 텐데 법적 검토를 한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 안 보내 주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실제로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지난 2008년 교과서 사태에 대해서 검정심의를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정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과정을 진행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수정명령단계에서는 특히 검정심의를 준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국감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수정심의회 구성을 해서 권고하고 명령을 했던 말이지요. 이 부분은 검정심의를 준하는 절차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관련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지 않고요.

지금 또다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문제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진행을 시킬 것이고, 저자들은 저자들대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또 이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적어도 법적 검토를 외부의 기관이나 아니면 법적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상식 아닌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대법원의 판례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그래서 수정심의회도 검정심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래서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의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정심의회 구성하고 거기에 수정명령하는 이 절차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에는 검정심회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보지 않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그것을 검정심회에 준하는 법적 절차라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지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자의적이지 않고……

○김상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자의적이지 않고……

○김상희 위원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그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지금 외부기관에서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 내에서 검토를 했으면 그 검토한 자료와 함께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고보다는 관련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법적 검토를 안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감 때 박홍근 위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법률 자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위원들하고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교육부가 알아서 수정심의회 구성절차라든가 이런 근거 없이 그대로 해서 또 안 되면 수정명령까지 하는 이 과정은…… 더군다나 지금 모든 교과서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정교과서의 심의절차라고 보여지지

어떻게 검인정교과서의 심의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내용은……

○**김상희 위원** 장관께서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도 않고 내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문제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태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자료를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검토를……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하시지 마시라고요. 왜 내부적으로 합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국감에서 계속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왜 내부적으로만 하십니까, 이것을?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그 관례에서 지적한 부분이 아주 간략한 부분이라서요.

○**김상희 위원** 관례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절차가 법적 절차에 타당한지 왜 이걸 안 받고 계속 이 부분을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저희는……

○**김상희 위원** 밀어붙이는 거지요. 검토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미 지금 검토 없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도 법이나 관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 주시란 말이에요.

그만할게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이었네요.

○**김상희 위원** 예, 이것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

○**김상희 위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신학용** 자료제출 하나도 안 했는데?

○**김상희 위원** 자료제출을 지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김상희 위원** 정부가 낸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데 학교장으로 임명된 후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과 이사장을 함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장이 지금 현재 있으면 이사장을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사장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것은 학교장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지금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장이 있으면 이사장을 뽑을 때는 학교장하고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뽑아 놓고 이것을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결과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거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김상희 위원** 명문 규정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학교장이 있으면 그 학교장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장으로 뽑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뽑아 놓고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김상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사장으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취임을 해 가지고는 승인조차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김상희 위원** 인정을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관할청에서 이 부분을 이사장에.

○**교육부장관 서남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이런 절차를 밟게 하면 저희가 볼 때 부적합하다고……

○**김상희 위원** 아니, 이런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부장관 서남수**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인정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취임을 못 하거든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경우에 이사 정수의 3분 2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선임된 것을 무효화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무효화가 안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법적 근거를 받도록 한 것은 오히려 이것을 면피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오히려 취임 제한 친족 범위에 형제까지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형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오히려 면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저희 취지는 면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통제를 해야만……

○**김상희 위원**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그것 가지고 지금 토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다음에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지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인 과학교육에 대해서 지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융합과학교육과정을 운용하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고발이 급증하고 있는데 1년에 2회 이상 정화구역 내 행위 및 시설을 점검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단속이 줄어들어서 유해업소가 오히려 더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취지는 좀 더 점검을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정우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은 보니까 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21개교가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교협에 포함시키는 것이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분리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정명령·변경 요구라든지 미이행 대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대교협에 포함시켜서 원격대학교들의 특수성에 맞게끔 협의하고 또 운영하는 데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원격대학하고 대교협하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적인 지위나 이런 면에

서 차이가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지금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개정안인데 여기에는 댐 주변지역도 이제 포함시키자 이런 말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댐 주변지역 중에는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댐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의무교육을 받는 데 불리하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댐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지역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교육부장관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운영경비에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자 이렇게 법 개정을 내서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요.

학교 전기료 문제는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최근에 제가 예산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는 ‘교육용 전기료는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동결됨으로 인해서 특히 초·중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8.9%가 인하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 전기요금에 4% 인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우선 방금 이야기한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산업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또 추구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 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좀 더 교육부가 현재 교육용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워낙 공공요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체 학교 운영경비에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용 전기료를 기본단가를 동결시켰다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는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우선 전기사업법이 우리 소관 법안은 아닙니다마는 이후에도 산업부하고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교육부가 강하게 주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무부처로서. 그렇게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초·중등교육법에 공공요금 인상분을 학교 운영경비에 반영하라 이 법안을 낸 것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제가 그 실태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 운영비를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도별로 여러 가지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교원당 이런 단가를 가지고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10개 교육청은 전기요금 냉난방운영비 등을 가산경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6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산경비 항목에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달리 말해서 이런 운영경비 기준 자체가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학교 운영경비의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낸 법안하고 바로 연동되는 것인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물가인상률

하고 비교해 보면 공공요금 인상분 자체가 연동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학교회계제도의 기본취지가 학교의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학교 예산을 편성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경비 부분에 대해 법률로 한다면 그 부분에서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법률보다는 시·도 교육청에서 배분을 할 때 이걸 좀 적정하게 반영하는 쪽으로 유도……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반영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저는 이런 기준 정도는 통일시켜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제가 보니까 전체 학교운영비의 40% 정도가 공공요금이고요. 이 공공요금의 한 49% 정도가 전기요금입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너무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재작년과 작년 비교해 보니까 한 18.7%인가 이렇게 또 전기요금 부분이 인상이 되었어요.

물론 이번에 기본단가에 대해서 동결하고 또 낮추는 효과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게 크진 않습니다. 한 2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전체가 지금 전기요금이 한 50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해 쓰는 게. 그리고 이게 대학보다 높아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보다 높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전기료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경비에 이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예, 한번 법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 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제가 국제중·고등학교, 자사고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 워낙 저하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질의·응답 과정이 있

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수용 곤란’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영훈국제중학교 문제 과정에서 얼마나 부조리한 일이 있었는지는 다 익히 아실 것이고, 또 영훈중 포함해서 3개 국제중학교가 소위 사배자 전형,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도 합격생 절반 이상을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85%, 12년도에는 92%가 부유층 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학교의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국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초 취지 자체가 국제 분야에서 소질이나 능력 있는 아이들을 키우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 귀국한 아이들을 위해서 도입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외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차별성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외교보다 국제고는 좀 더 귀티 나는 귀족적 학교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던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이 제도 도입 취지 자체와 반하고, 장관도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교다양화 정책으로 도입됐던 자사고 문제만 해도 이것 지금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수학생 선발권의 부분 저는 이것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결국은 다양화 정책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효과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자사고 부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사고 부분하고 이 국제중·고등학교 문제는 도입 취지하고는 아주 상반되게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국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교가 그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일반중·고등학교로 전환시키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도 자공고가 그 기능을

저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최근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어떤 불공정성의 문제, 또 애초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안을 통해서 이번에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는데 장관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운영상에 여러 가지 국제 중처럼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저는 오늘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世淵 委員**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4818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가 전년 대비 81% 증가해서 1만 28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리적 위축에서부터 심하게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수가 가해학생의 1.7배인 반면에 Wee 센터 등을 통한 학교폭력 관련 상담은 가해학생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의 피해학생만이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상담기관이 현행법상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러한 의무적인 보호조치가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앞으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받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상담·심리치료 등의 조치 의무 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또 피해학생을 의무 보호하지 않는 동시에 아주 정도가 심한 가해학생은 또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런 현행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금 내용을 수용하면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世淵 委員** 그러니까 부처 간에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과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할 문제로 협조가 잘되지 않는 것을 계속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범부처 사업으로 명확하게 해결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되든 아니면 복지부가 되든 관련 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 계획을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지 그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저희 의원실로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예, 알려 주십시오.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예리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수어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관님, 혹시 한국인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청각장애인 간 의사소통을 하려면 통역이 몇 명 필요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3명 내지 4명 필요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농아농구대회인가 나갔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世淵 委員** 예, 적어도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수어와 한국어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한국어와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 또 외국어의 일반인 언어와 수어를 통역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어야지 의사소통이 되는데, 법안이 실제로 제정되고 그리고 시행되는 단계에서 꼭 갖추어야 될 부분이……

교육과정상에도 수어가 제2외국어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한국어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어는 각국별로 단어나 여러 가지 문장 표시하는 방법이 다 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교육과정에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수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같이 좀 협조를 하셔서 교육과정에 좀 들어갈 수 있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병원 같으면 복지부 또 경찰 같으면 안행부와 협조가 되어야 될 사안인데,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감기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미리 수어 통역사가 같이 대동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긴급상황이다,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도 수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기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金世淵 委員** 경찰 쪽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전에 국회에서 말씀은 참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감감무소식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되는 창조경제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동작을 바로 해석해서 수어 통역이 될 수 있는, 요즘 구글 같은 데서 보면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를 음성 인식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통역하지 않습니까? 수어 경우에는 동작 인식의

경우에 훨씬 더 통일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사람의 부정확하고 다양한 발음보다는 통일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개발의 용이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청각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잘 알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끝났습니까?

○**金世淵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교육부장관님, 제가 낸 법인데요. 대학에서 학생들 반값등록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접근 말고 등록금을 학기별 등록금으로 할 거냐 학점별 등록금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가 학점별 등록금 하는 법을 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97년에 이미 교육부에서 학교에다가 권고를 했는데 이걸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징수 방법이죠. 취업문이 좁아져서 대학을 마치고도 한두 학점 가지고 그냥 학적을 유지하면서 등록하는데 1학점만 받아도 등록금 400만 원을 다 낸단 말이에요. 아마 한두 학점 남아서 학교 졸업 못 한 학생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이거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배우는 것은 한 학점 배우는 아이들이나 20 학점 배우는 아이들이나 똑같이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점별 등록금제로 바꾸자, 97년에 교육부가 대학에다가 권고했듯이 이것을 권고만 해 놓고 하라고 아무런 강제적인 조항이 없으니까 학교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 제가 제출했는데 좀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학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좀……

○**우원식 위원** 대학의 의견을 듣지 말고요. 대학 사회에서 보면 대학이 학생들한테 완전한 갑입니다.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대학이

잡인 그런 지위가 상당히 흔들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대학재정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우원식 위원** 아니, 2007년에 이걸 권고를 했던 사항이라니까요?

(유기홍 간사, 김세연 위원과 사회교대)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우원식 위원** 권고만 하면, 지금 장관님처럼 얘기하면서 권고만 하면 뭐 합니까? 안 하면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요. 한 학점 더 듣기 위해서 등록금 다 내는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학과 통폐합 이것도 대학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는 없애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 쪽의 학과들이 막 없어져요.

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상아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상아탑이 아니라 취업하는 문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학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아주 취약해지고 있어서 말이지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무려 457개의 인문학 관련 학과가 통폐합돼 버렸습니다. 57개가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학교로 보면 굉장히 위기인데 학과의 폐과, 통폐합 이런 것들을 대학교 마음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의 취지는 대학에서 학과 신설 및 통폐합을 진행할 시에 이를 지체 없이 학내에 공지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공청회 토론회 학생투표 그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냈는데 그건 교육부에서 의견이 어떠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실제로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법제화를 하면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서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학과 통폐합을 하려면 학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학칙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학내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투표에 부치거나 이렇게 되면 대학의 속성상 그 구성원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법제화하게 됐을 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원식 위원** 우리 사회가 지금 기형적이예요. 장관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게 돈벌이 수단, 대학의 재정 이런 것만이 아니라 대학은 공부하는 데고 진리의 전당이 대학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취업 안 되면 구조조정하고, 무슨 놈의 사회가 그렇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도 저 스스로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문학의 중요성은……

○**우원식 위원** 그리고 학점당 등록금제도 꼭 대학에 마이너스만 되는 게 아닌 게 아이들이 이렇게 학점당 등록금을 하면 자기가 자기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학점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다가 안 되면 중단해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따져보시고, 첫 번째는 학생들·학부모들의 관점에 서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재정 상태 이야기하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설득도 하시고 이러면서 아이들 중심, 공부하는 사람들 중심 이런 관점을 대학에다 자꾸 쥐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한선교 의원님께서 내신 과학교육진흥법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융합과학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창조경제가 뭔지 아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창조경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ICT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그런 일자리나……

○**우원식 위원** 그런데 그걸 위해서 6899억 원을 향후 5년 동안 한다 그러는데, 이거 매년 하면

거의 2000억, 1700~1800억 정도의 돈을 한다는 데 창조경제를 그렇게 따로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과, 과학과 관련된 과 이런 것에 잘 지원하면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전체적으로 창조경제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스팀 프로그램(steam program)이라고 해서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참여도 낮고 관심도 낮고 이래서 프로그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뚜렷하고 교육 효과가 분명하고 이렇지 않고 어리벙벙하게 짜 가지고는 잘 안 된단 말이지요.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서 법적 근거를 더 붙여서 개념도 분명치 않은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6899억을 5년 동안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교사들은 또 비정규직 아닙니까? 지금 있는 비정규직도 호봉제 하면 3만 원 그거 해 주라는 것도 못 해 주고 있으면서, 더 들어가는 게 천몇백억밖에 되지를 않는데 그건 안 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을 목표도 분명치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권이 이야기하는 창조경제라고 거기에 무조건 뒷받침하는, 이건 실패할 게 뻔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규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 법률안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동

료 위원님들 그리고 장관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동북아역사재단에 실력이 검증된 그리고 신원이 확실한 외국인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국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외교문서 등 기밀자료를 다룰 수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재단 내부규정으로 다루는데, 유사한 사례가 외교부 외국국적자 채용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채용규정에 준해서 동북아역사재단도 실력 있는 그리고 신원이 확실한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그리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때마다 늘 지적하던 사항 개선을 위해서 발의한 법입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고 성과가 저조하면 보조를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대입전형 시에 한국사를 필수로 포함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유사 법률안이 지금 8건 정도 상정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 정부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또 국정교과서 얘기를 계속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안은 그런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선교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거의 모두 다 우려를 제기하고 장관께서도 신중 검토 한다고 하는데, 영전장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죠,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4년간 고용기간이 끝난 그런 강사들의 신분 불안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526명 올해 계약 해지됐고 내년에도 한 6000명 정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가 창조경제라는 얘기가 있는데, 영전장을 또다시 양산하는…… 그때 영어 몰입 교육 때문에 시작한 게 영전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구요.

우리 유진룡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 관련인데요.

1981년 프랑스 도서정가제법은 책을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 안 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한다 하는,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이런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신간 발행 종수가 전년 대비 9.7%나 감소했어요. 2011년에 4만 4000건이었다가 2012년에 3만 9700건이나 하는데...-

서울대학교 앞에 ‘광장서적’이라는 서점이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출판 산업과 문화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서정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유기홍 위원 대략 온라인 서점이나 중소 서점의 이견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많이 조정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많이 조정됐습니다.

온라인 서점 쪽에서 처음에는 전면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완화된 조건에서 자기네들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김세연 위원,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기홍 위원 그래서 이런 이견을 좀 최소화하면서 도서정가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다음에 고등교육법 관련인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시간강사법 관련해서 3년 유예안을 냈던 것 서남수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당시 사실은 1년만 유예하자 그래서 했는데, 1년 사이에 어떤 해결책을 만들지 못해서 다시금 유예안을 우리 존경하는

윤관석 의원께서 내셨는데.....

장관님, 국회의원들이 유예하는 법안을 이렇게 계속 내야 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교육부가 시간강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시간강사 문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워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안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한 2년 정도 더 유예를 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간강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근데요 오죽하면 유예 법안을 냈겠습니까? 이게 대학도 반대하고 강사들도 반대하는 그런 법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인데, 정말 1년 동안 저는 교육부가 아무런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년 유예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년 동안 또 계속 국회에 핑계대고 그리고 계속 것 아닌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아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선 2년 유예한다고 할 때 교육부가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로드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TF를 구성하고요 그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대학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 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분들은 저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분노를 가지고 국회 앞에서 몇 년째 1인 시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교육부가 먹살을 잡히는 한이 있어도 그 당사자들 의견을 정말 충분히 듣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 지금 2년 유예라고 하지만 입법 절차에 걸리는 시간 1년을 제외하면 적어도 앞으로 1년 사이에 해법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 주호영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세 기관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하는 일은 왜 매년 실패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 의도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에 반응하는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의 틀을 넘어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도 결과는 영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허다하다는 겁니다.

저는 법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한두 조항이 정교하지 못하든지 반대가 되면 결과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나오는 결과가 많거든요. 이런 법률들 검토하고 챙기면서도 각별히 그 점을,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그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도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많은데 그런 데서 부실하면 훨씬 더 문제가 되거든요. 유념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유기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저는 국립대학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상벌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를 하는 성격이 있고 꼭 영리로만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또 있으니까 이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반영이 되는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고 평가 목적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영 결과가 엉뚱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점

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세세한 것까지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구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학부 통폐합, 이제 대학 입학자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미리 정리해 갈 필요가 있는데, 하위 15% 커트 를 때문에 각 대학들이 없애는 걸 보면 예체능계열을 없애고 인문계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딱 그 평가에 맞는 것만 없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체능계도 필요하고 인문계도 다 필요한데 취업률 기준 이런 걸 다 따지니까 예체능계는 그 점수에서 다 못 하니까 자꾸 학교가 재정 지원 대학에서 빠지든가 이러니까 통폐합이 그리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법안은 통폐합을 대학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대학 조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하라는 거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그 기회에 예체능계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통폐합에서 우선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는 안전장치도 좀 만들든지 아니면 평가기준에서 취업률에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제한다든지 더한다든지 이런 것으로써 좀 균형이 잡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구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래서 금년에 그 응급조치로 취업률 산정에서 인문학 분야하고 예체능 분야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 논문 표절이 최근 인사청문회가 활발해지면서 매 건마다 표절 여부가 많이 문제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 논문을 따져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지금 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되기 이전하고 이후에 인식에 많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표절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 자체가 지금 규정에 의하면 그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것 자기모순 아닙니까? 자기들이 학위를 주고 나서 표절이라고 들어오면 표절이라 하기에는 자기들 심사한 기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사 기간도 오래고 결론도 안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3의 기관을 만들자 그러는데, 제3의

기관을 만들어도 논문이라는 게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고 어떻게 기관을 구성해야 그 고도의 지적 수준의 논문을 표절했다 안 했다 알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우리 이상민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참으로 적절한 거지요. 이 기회에……

물론 표절이나 이런 시비가 없도록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교 다니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소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학문적 풍토에서는 그런 점이 많이 미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좋은 방안을 외국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하고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빠르게 시비를 종식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좀 잘 한번 강구해 봐 주시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문광부장관님, 언론에서 얼마 전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호텔 등급표시제, 무궁화가 외국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부여하고 나면 재심사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주호영 위원** 10년 지나도, 처음 호텔 만들 때는 깨끗한 거였는데 낡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주호영 위원** 그래서 얼마마다 다시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낸 법안에 보면 등급제 의무화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최고 한도가 100만 원인데, 이것 너무 낮습니다. 왜냐하면 방 한 2, 3개만 팔아도 100만 원 나오는데 무궁화 2개를 3개로 해 놓고 한 달만 위반해도 그 돈 나온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것 실제 위반하면 훨씬 더 불이익이 크도록 만들어야 되고, 고의범 아닙니까, 이게? 무궁화 2개를 3개로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건데, 이것 과태료가 아닌 형사벌로 하든지 훨씬 더 강화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주호영 위원** 내가 나쁜 업자라면 이것 맞고도 계속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지난번에 국

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고요 그것 좀 수정을 해 주시면 과태료 올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과태료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큰 호텔 방 수백 개 있는데 그것 하루에 1개씩만 더 팔아도 한 달이면 엄청난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을 굳이 특수법인으로 바꿀 필요성이,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이것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됩니까, 법인 성격을?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지금 이 기관에다가 저희가 자격증 심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 민법으로서는 저희가 공공성 있는 업무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데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특수법인으로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문화재발굴사 국가자격시험제도 도입, 이것도 지금 국가자격시험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틀과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새로운 자격증 체도를 만드는 것이.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발굴사 자격 심사 요건 중에 실무 경력하고 문화재 관련 학과에서 취득한 학위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고졸자라든지 문화재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준문화재발굴사가 돼도 영원히 ‘준’ 자를 땔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규제나 자격증체도가 이 흐름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실력이나 기능으로 인정되면 돼야 되는데 고졸자는 영원히 안 되게 되어 있고 관련 학과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고졸자나 관련 학과가 아닌 사람 중에도 우수한 사람 많잖아요. 그 장애는 좀 풀도록 하세요, 하더라도.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그 부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동덕여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1년에 했는데 16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학점당등록금제도로 하니까 16학점이 넘게 신청하는 사람은 오히려 인상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학점당 등록금을 왜 16학점으로 했는지 동덕여대 사례를,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사례를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등록금제로 하면 휴학하느냐 다니느냐 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점당등록금제로 하면 그것을 넘어시킬 수 있어요, 자기 여건에 맞춰서 다니면 되니까. 그러면 학교에도 그렇게 재정이 안 들 텐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디 뭐 연구용역을 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연구용역 한 결과물…… 한 달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한 달 갖고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연구용역 주려면 그것을 공모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시간이 한두 달씩 소요되고 해서요. 조금 시간 여유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연구……

○우원식 위원 그것 하면서, 학점당등록금제를 하기 위해서 등록금 산출기반이 되는 교육비 원가 산정 이런 게 어디에도 근거가 없거든요. 그것을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서너 개 학교 샘플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학과 통폐합 관련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옆에 앉아 계신 문화부장관님, 문화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세부사업을 확대하자, 특히 예술이나 이런 것, 대학에서 이게 취업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더 그런 모양인데, 교육부는 관련 학과가 통폐합되어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부처 사이에 이런 학과 통폐합이나 인문학 또는 예술계통 이런 쪽이 자꾸 통폐합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어떤지 두 부처에서 저에게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부도 인문학 진흥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학과 통폐합 문제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 다 해당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원식 위원 예.

○위원장 신학용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재정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먼저 좀 여쭙 보겠습니다.

오늘 71번, 72번 법안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여쭙 보고 싶은데, 지난해 2월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배재정 위원 그래서 지난 11월에 학교폭력 유공자에 대해서 승진 가산점을 주도록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반말이 일어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가산점 문제는 항상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지요.

사실 전교조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교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교육부장관 서남수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을 맡은 분들한테는 당연히 저희가 가산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언제나 가산점을 주게 되면 이게 승진 가산점이기 때문에……

○배재정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반대편 쪽에 있는 분들

한테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돼서 그런 면에서 언제나 갈등 요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래서 우리 교원분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런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승진 가산점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학교폭력 유공 교원 대상도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하고, 그리고 대상도 정규 교사 중에서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또 갈등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공적이 있으신 분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 승진해야 되니까 나한테 좀 몰아줘'라든가 이런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이런 가산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가산점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개정안, 지금 의안번호 5928번도 그렇고 그다음에 5309번도 그렇고 저는 또한 좀 염려가 되는 게, 하나는 재정적 지원까지 보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사후조치 같은 경우에 혹시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조사 내지 징계가 남발될 그런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이 법의 취지는 모든 인센티브제도가 그런 위험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학교폭력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면에서 성공한 학교나 또 거기에 공헌한 교원에 대해서는 좀 그런 조치를 할 때 학교폭력이 완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어서 일단은 큰 부작용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가산점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그리고 거기에 재정 지원까지 할 경우에 더 그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고요.

사후조치의 경우는 저는 당장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징계를 오히려 너무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뻔히 좀 내다보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이것은 오늘 상정된 번호로는 78번인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질의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같은 학교에서의 강사제도 부분이 계속 현안이 되고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융합과학교육 강사를 또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률인데, 그러면 교육부 입장은 이런 다양한 부분에 강사들을 현장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런 강사제도를 마구잡이로 도입했을 경우에 교육 현장에 오는 혼란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까? 장관님, 어떠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융합과학교육 관련 부분은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어강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들이 회화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융합과학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교과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가르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현재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융합과학적 관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드려야지 그 선생님들을 놔두고 또 다시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위원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도 지금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에 강사를 도입할 때, 물론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잘 흡수해서, 잘 융합해서 그야말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제대로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것에 저도 물론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비정규직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좀 심각하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해결책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구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다음에 2번 법안인데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학생들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핵심 내용이 있는데, 학생들의 어떤 체력 증진이라는 측면은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것을 과연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 정책목표는 뚜렷합니다마는 이것을 바로 입시성적이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새누리당 부산 연재 김희정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관련 된 내용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보면 63%가 등급제를 미준수한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중에 질의하시는 내용을 봤더니 등급제를 준수하고 있는 호텔의 경우에도 표기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 잘 모르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현행에 있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금년 말까지 지금 제도개선 방향을 정하고요. 내년 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바꿀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단순히 법을 통해서 등급화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등급이 의미하는 바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존에 현장에서 적용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이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바둑 진흥법안과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바둑 1등 국가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뭐 꾸준히 바둑을 잘하고는 있지요.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20~30년 전에 일본이 굉장히 앞서가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가 바둑이었는데 중국이 부쩍 국가 지원을 늘려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사실 그동안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한 종목을 별도의 법률로 이렇게 제정해서 하는 건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김희정 위원** 뭐가 무리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을 별도의 법률로 이렇게 제정해서 하기에는 좀…… 그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별도 법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법안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 내용 중에서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라든지 바둑지도자 양성하는 거라든지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렇게 주요 법적 내용에 대해서 혹시 문화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기본적으로 바둑이 중요하고 바둑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말을 바꾼다면, 바둑이 그렇다면 다른 어떤 스포츠 종목들도 다 각계의 법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부 차원에서 법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사실 전문위원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가 오늘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과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바둑이 가진 우리나라에서의 위치,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바둑이 그동안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준 그런 기여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이 법안에서 살리고자 하는 내용을 잘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저에게 좀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다음은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출한 법안, 오늘 의안번호 40번하고 41번,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법률안인데, 어떻습니까? 이 법안 개정안을 통과로 해서 예산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 제시해 주신 방향이 사실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저희가 다음 주에 법안소위를 잡아 뒀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법안 개정을 전제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안 책정에 증액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현재 재학생 이외에 돈을 빌릴 당시의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장 신학용 지금 선진국 사례를, 좀 많이 해 주고…… 제가 알기로도 선진국에서도 동네서점 보호 문제, 저작권 보호 또 책 출간업 보호를 위해서 아마 자꾸 더 엄격해지는 게 할인율도 줄이고, 조사한 것 나온 것 보니까 굉장히, 5~10% 정도 할인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온라인 판매도 금지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통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은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인데요.

○위원장 신학용 그때 외신에 한번 난 기억을,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물론 소비자 후생도 중요하지만 사실 출판업계의 부활 문제 또 저작권,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이번에 좀 임해서 가지고 나름대로 뜻한 바 목적을 좀 이룰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자,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박홍근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신학용 아, 박홍근 위원님부터……

아니, 잠깐만. 한 10분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마저 끝까지……

○박홍근 위원 많지 않으니까 그냥 마저 하시지요.

○위원장 신학용 그냥 할까요?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박홍근 위원님부터 보충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문체부장관님, 좀 전에 도서정가 제법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동안 문체부가 원론적으로는 계속 ‘필요하다, 시행해야 된다’ 하면서 사실 해오신 게 별로 없어요. 간담회 한 번 정도 개최한 것 말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 부분은 저희 부로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토론을 해 온 문제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런……

이게 대통령도 보니까 지난 6월에 ‘정가로 사야지요’ 얘기를 했고 또 11월에는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조속히 정가제로 간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를 아마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정부가, 주무부처가 나서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런데 그 중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재가 안 되는 부분은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와 저희 부와의 입장, 워낙 그 양 부서의 기본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중재하기가……

○박홍근 위원 아니, 공정거래위원회니까 소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보다요, 제가 보니까 이 관련업계 내에서 서점연합회와 나머지와 어떤 관계 문제가 있어요. 10+10 할인율과 그다음에 마일리지와 같은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제가 보니까 이 부분만 해소를 시키면 지금 됩니다.

거의 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관련된 업계들이 만나 오면서 조정을 해 온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의, 그동안 감이 알아서 그냥 떨어지기를 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너무

미루어 온 숙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뭐 ‘신중 검토’, ‘신중 검토’ 이렇게 지금, 오늘 그 개정안에 대해서 문체부가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지고요,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이 문제 반드시 풀어낸다고 답을 주시고, 대통령도 또 국무총리도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로드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이번 국회 회기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저희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여러 차례……

○박홍근 위원 그러면 그 업계 부분하고만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되면 이번 국회 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가능하지요.

○박홍근 위원 동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물론입니다.

○박홍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제안을 하셔서 가지고 그런 중재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지금 저희는 여러 차례 만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그 안을 담아 주시면 됩니다.

○박홍근 위원 저도 내용을 보고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문체부가 한 일이 별로 없다가요. 원론적인 얘기만 많이 해 왔고 오히려 업계들끼리 만나서 그동안 이 문제를 조정을 해 왔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항상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해 오는데, 대교협법이 있고 전문대교협법이 있고 지금 원격 교육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각각 둘 필요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이나 아니면 원격 대교협법 이것을 좀 묶어서 통합법으로 만들고 거기서 미진한 것은 오히려 고등교육법에서 좀 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데 그들 대학들 간의 이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법 쪽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그 대학들 간……

○**박흥근 위원** 아니, 공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것으로 묶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생입시 제도의 어떤 기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능마저도 지금 대교협에서 부정을 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기타 공공기관 정도로 해 가지고 이 세 개를 묶어서 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법적 근거를 두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이 있는데 다시 원격대교협법을 만들어서 다시 그 논란을 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흥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전문대 관련해서 지금 수업연한 문제, 이 법안 잘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흥근 위원** 저는 우선 지극히 제한된 분야의 특수 대학원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의 기존 수업연한을 다양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전문대의 설립 취지, 직업인 양성 이런 것에 좀 반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후에 이것이 전문대학 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가령 지금 고등교육체계 자체가 1년은 직업교육, 그다음에 2~3년은 전문대학, 4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교육 이렇게 나뉘져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막 무너뜨리고 1년에서 4년까지 전문대에서도 가르치게 하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우선은 대부분이 아마 수도권 전문대학으로 다 쏠릴 것입니다, 4년 대학으로 가 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지방의 전문대학은 보나마나 황폐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교도 당연히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2년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학 간에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4년 수업으로 갈 경우에 학비 부담에 대한 것도 커지고요. 그리고 1년으로 단축할 경우에 직업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또 어떻게 답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사회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률로 추진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문화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도종환 위원** 좀 전에 신학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외국 사례 자료는 저희 법안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가 되리라고 보고요.

서점 70% 이상이 줄었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책 판매부수 계속 해마다 8%~11%씩 줄어 들고 있고 또 도서 신간발행 종수 23% 감소하고 있고 출판 생태계 전체가 지금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테요.

도서정가제 불완전하게나마 시행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최재천 의원 대표 의원으로 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도서정가제는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최근까지 저희 주최로 여섯 번을 가령 출협이라든가 출판인회의라든가 서점계의 여러 사람 모아서 회의를 했고 최근에는 거의 수렴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온라인서점 쪽에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온라인서점에서도 알라딘을 빼고는 다른 쪽에서는 동의를 한 안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다만 소비자들이 말하자면 책값이 오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도서관 같은 데 정가로 책을 공급하게 될 경우에 예산 대책이 없으면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점 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도서관 부분은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정가로 사줘야지 이것이 정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체도를 하면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대폭 상향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두 번째 질의 할게요.

지난 9월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이틀 만에 상영을 중단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도종환 위원 그때 상영관 측이 내놓은 이유가 일부 단체가 항의하고 또 시위를 하겠다는 예고로 인해서 관람객 간의 충돌이 예고된다 이래서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상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일부 압력을 가해서 상영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 개봉 전에 일부 단체나 유족들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었지요. 그러니까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IPTV도 상영하려고

했다가 일부 단체가 항의하는 바람에 이것도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도 안 되고 IPTV도 안 되니까 아예 이 제작 배급을 맡았던 정재영 감독이 “그냥 포털을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도종환 위원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이렇게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서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까 정부 발의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18대 때도 발의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도종환 위원 이게 지금 법인화해서 얻는 실익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정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예산상 독립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성 올리려고 하다 보면 공공성이 떨어지고 외국처럼 기부문화가 잘 되어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도 법인화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도리어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인화해도 국고 지원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물론 국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또 감독해야 되고 또 그러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행부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도종환 위원 문화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 가령 광주 같은 경우도 아시아문화전당을 하더라도 법인으로 하나 국가기관으로 하나 국가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해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는 실제로 운영하는 경험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법인을 함으로써 그 법인의 기관장이 훨씬 의식을 가지고 하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문화부가 안행부를 주무부처로서 더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가령 서울대학교 법인화처럼 전체적인 기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배재정 위원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상당히 중복이 되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성을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도종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18번인데 이 법 발의된 취지를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취지는 아까 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재정 위원 공감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그런데 ‘천안함 프로젝트’ 사건이 사실상 발생했을 때 영화인들께서는 메가박스 협박단체에 대한 고발, 수사당국의 수사, 제상영을 위한 문화부의 행정조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이 사인 간의 계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개입하기는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실제로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금방 말씀하신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입장하고 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이 법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지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다각도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제하지 못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인 간의 계약행위에 그것을 법으로 강제했을 경우에 위헌 소지가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공고하게 조금 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하면 또 똑같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정작 영화를,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창작물의 경우가 될 것 같은데 모든 창작물이 이렇게 특정한 곳에서의 어떤 압박이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지요.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가 없고요.

다만 법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법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재정 위원 예, 그런 장관님 말씀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들 자기 검열을 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미술관 역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문화부 입장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꼭 국립중앙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산하단체라든지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법인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것 참 민감하고 미묘한 입장이지만 저희 부로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책임을 많이 지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이 부분도 저는 현장의 목소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예컨대 아까 공무원을 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공무원적인 그런 룰이나 어떤 예산과 통제 이런 딱딱한 운영들이 현장에서 펼쳐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고 현장하고의 소통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기본법안이 오늘 의안번호로는 163번인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기본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국민체육진흥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본법안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문화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조금 더 취지를 잘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다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같은 경우도 그동안 술하게 개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입법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선을 빚는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부 입장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다 더 매끄럽게 잘 가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체육기본법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실 의사도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희는 가령 기본법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진흥 기본법을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시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체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공론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을 잘 운영을 하는 게 우선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世淵 委員 문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글 세계화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국립국어원에 의견을 받아 보니까 우리 한글이, 일종의 수출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한 국가의 국력을 좌우하는 또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소프트 파워를 수출하는 데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가 높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자라 생각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영어가 세계의 보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통용되면서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제국의 지위에서 내려온 지가 한참이 되어도 영향력을 실제 국력보다 훨씬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의 경우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된 그런 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음가보다 좀 더 보완을 해서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가들을 좀 더 현대에 맞게 또 시대와 지역에 맞게 고안을 해낼 수 있다면 한글이 표음문자로서 세계에 보다 널리 쓰일 수 있는, 적어도 어떤 발음기호 내지는 표기문자로서 효용 가치가 아주 높게 쓰일 수 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짜아짜아족이나 솔로몬 군도의 어느 섬에서 우리 한글을 표음문자로 채택했던 것도 그런 용도로 채택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의 부족한 면이 노출이 되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혹시 현대에 맞게 과거 음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여러 학자들 의견이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4개의 자음, 사라진 자음을 현대에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고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류가 가요에서 시작이 돼서, 케이팝(K-pop)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다른 장르로 지금 번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도 있고 발레도 있고 여러 다양한 장르도 나오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이런 하나의 한류 인프라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한글 세계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학문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없어진 4개 글자를 다시 되살려서 하는 것은 저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글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세계화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글자와 말이 일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을 보급을 하는 건 가령 영어 보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자는 조금 다른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짜아짜아 같은 경우도 보급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실패한 사례로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글자를 보급을 한다는 게 지나친 어떤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의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의 글자를 채택을 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법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말씀드린 취지가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자 체계를 택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고 말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현재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음가의 영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 국내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문자 체계에 혼선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창제된 문자 체계를 어느 다른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쓰고자 할 때는 항상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학문적으로 대비를 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점에서 어떤 오해나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거는 저희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世淵 委員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정리를 좀 하면서 관련해서…… 시간 안 좁니까?

한글 세계화와 함께 동시에 필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가 한자 교육을, 과거에 보면 국어 안에 있던 한자 과목이 독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필수였다가 선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꼭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요청을 계속 했지만 지금 반영된 것은 방과후학교의 비교과 선택 과목으로 일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것 외에는, 단위 학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한자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한자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어 능력이라든지 개념어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학력 저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능력검정시험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약 90% 정

도가 초등학생들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에서 좀 더 수정을 해서 교육과정 안으로 한자를 편입시키는, 그것이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임과 동시에 또 중국과 일본, 한자 문화권의 우리 아이들이 더 활발하게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프라가 된다는 차원에서 양 부처 간에 지금 교육정책과 어문정책이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에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해 놓으신 법안이 있고 또 김광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이번에 같이 법안심사소위로 바로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 부처 간에 꼭 협력을 하셔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간단하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지금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거기에 지금 재학생이 2만 5000명인데요. 2만 5000명이 넘는데 지금 일반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부적응 문제라든가 가정형편 등의 문제로 해서 일반학교에 있다가 평생교육시설로 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꽤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가기 위해서는 전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일반학교에 있다가 평생교육시설로 갈 때 자퇴를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변의 시선도 많이 의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꼭 이렇게 자퇴

를 하고 가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해서 내놨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학생들이 자퇴를 해야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 자체는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김상희 위원 이거 고쳐 줘야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시설하고 초·중등학교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에서 평생교육시설로 가는 부분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학교에서 평생교육시설로 가는 부분은.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학생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퇴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주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거는 마땅히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그다음 번에는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왜 저쪽에서는 이렇게 전학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전학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시설하고 학교의……

○김상희 위원 저는 그것은 제도적으로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학교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서로 가게 하는 것도 저는 왜 그것이 꼭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학교로 전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학교에 다니다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가는데 ‘자퇴를 하고 가라.’ 이걸 너무 정말 비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비교육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이걸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형식적인 형식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를 의무교육화한다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사실은 당장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자퇴해라.’ 이런 경우가 많이 됩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요 교육부에서 이 부분,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18대 때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시다. 여전히 이게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전향적으로, 그때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게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겠다고 확정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좀 심의 과정에서요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장 신학용**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

○**배재정 위원** 하나만, 1분만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학용** 예, 배재정 위원님.

○**배재정 위원** 문화재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166번으로 올라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문화재청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문화재 기본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개정안 살펴보셨습니까?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배재정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인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과연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우리 문화재 보호의 측면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화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도 저희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튼튼한 틀 속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더 추가해 넣어서 이것을 확실히 이 절차를 지키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예컨대 4대강 사업에서 볼 때 국회에서 문화재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논리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문화재 파괴 문제가 현재 드러나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오히려 이 개발 논리가 더 강화되어서 문화재 보호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겠습니까?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게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거꾸로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지금 저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부처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꼭 당부를 드리는데 문화재가 항상 개발 논리에 밀려서 뒷전이 되는, 우리가 술한 그런 역사들을 다 지켜본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강력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 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 소관 4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4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마친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이에리사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정진후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박창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배재정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이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남수 장관님, 유진룡 장관님, 박영대 차장님을 비롯한 부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강은희	김상희	김세연	김장실
김태년	김희정	도종환	박성호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신학용	안민석	염동열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이에리사	정세균	정진후	주호영
현영희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길정우 김재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용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서남수		
차관	나승일		
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교육정책실장	심은석		
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정책기획관	정종철		
국제협력관	강영순		

학교정책관	김영윤
창의인재정책관	김성기
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대학정책관	박춘란
대학지원관	한석수
학술장학지원관	서유미
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결
평생직업교육국장	박용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제1차관	조현재
제2차관	김종기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원용민
문화정책국장	나태훈
예술국장	김용언
관광국장	신위진
체육국장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	박나중
정책기획관	김송수
콘텐츠정책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	박민권
관광레저기획관	
문화재청	
청장직무대행	박영대
기획조정관	박영근
문화재보존국장	강경환
문화재활용국장	김경원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김철민